

기업세계화 지원기획단
최종보고서 별책 Ⅱ

해외진출 한국기업 애로사례

94. 12



3-111/II-11

기업세계화지원기획단
대한무역진흥공사

kotra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본 자료는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의 소장 자료를
국립중앙도서관이 전자책으로 구축한 것입니다.

기업세계화 지원기획단
최종보고서 별책 Ⅱ

해외진출 한국기업 애로사례

94. 12



기업세계화지원기획단
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진출 우리기업 애로사례

머 리 말

지난 5월 구성된 세계화지원 기획단 최종보고서와 함께 우리 기업이 국내외에서 무역 및 투자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겪는 각종 애로사항을 정리, 보고서로 발간하게 된 것은 매우 뜻 깊은 일로 생각합니다.

특히 이보고서는 현재 대한무역진흥공사 내에 설치된 기업세계화지원 센터에 접수된 우리 기업들의 애로 신고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으며 따라서 이 자리를 빌어 정보를 제공해주신 업계 여러분 및 대한무역진흥공사 해외 무역관장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시간 제약상 금번 보고서에서는 해외 34개국으로부터 접수된 107건의 애로사항과 국내 기업들로부터 접수된 43건의 애로 사항을 우선 정리토록 하였으며 신고된 정보에 대해서도 정밀한 검증의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을 아쉽게 생각하며 앞으로 이를 보완해 나가도록 할 예정입니다.

기업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우리 기업 스스로의 노력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우리 기업이 국내에서나 해외에서 피부로 겪는 애로 사항을 신속히 파악하여 이를 정책수립이나 외국과의 통상협상에 반영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보다 정확하고 자세하게 전달하려는 기업들의 노력이 무엇보다도 절실히 요구되며 이러한 토태위에 정부는 효과적인 국내 정책수립이나 대외통상협상을 펼쳐 나갈수 있게될 것입니다.

끝으로 본자료 작성을 위해 애써주신 상공자원부와 대한무역진흥공사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며 이자료가 우리정부의 통
상정책수립에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1994. 12. 15

기업세계화지원 기획단

제3소위(해외정보 및 시장개혁 소위)

위원장 정 귀 래

目 次

I. 해외 진출 기업의 애로 사항 (107건).....	9
○ AUSTRALIA(4건)	
-입찰참여시 공업규격 문제	11
-국제 통화료 할인건	11
-역외 금융 제한	12
-상사직원에 대한 FBT부과 문제	13
○ AUSTRIA(4건)	
-TV에 대한 고율관세	13
-VISA발급상의 애로	14
-지사에 대한 사회 보장세 부과	15
-연금 및 실업보험 가입 강제	15
○ BELGIUM(1건)	
-VISA취득상의 애로	16
○ BULGARIA(4건)	
-대금 결제 방식상의 애로	17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미비(1)	18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미비(2)	19
-관세 및 통관상의 애로	19
○ CANADA(2건)	
-특혜관세(GPT) 수혜기간 연장(1)	20
-특혜관세(GPT) 수혜기간 연장(2)	20

○ CHILE(1건)	
-VISA 발급상의 애로	21
○ CHINA(6건)	
-수출대금 회수 불확실(1)	22
-수출대금 회수 불확실(2)	23
-노동조합 강제 설립	24
-대금 지급 지연 및 제품 인수 거절	25
-통관 지연 및 금융처리 지체	26
-신용장 통일 규칙의 위배	27
○ COSTARICA(3건)	
-승용차에 대한 고관세	28
-면세 통관품 처분 제한	29
-복잡한 투자 진출 절차	30
○ CZECH REP.(1건)	
-자동차에 대한 차별관세 적용	31
○ DENMARK(1건)	
-수출보험 운영상의 문제점	32
○ EGYPT(1건)	
-통관 및 투자 허가 지연	33
○ FRANCE(1건)	
-규격인증 취득 기간 지연	34

○ GERMANY(5건)	
-체류 VISA 발급 기간 연장	35
-반덤핑 조사 남발	36
-국별로 상이한 규격 승인 기준	36
-GEMA CHARGE 부과	37
-부당한 반덤핑 관세 부과	38
○ GREECE(1건)	
-교민 체류 허가 기간 연장	39
○ HONG KONG(1건)	
-茶 수입시 까다로운 검역절차(한국의 경우)	40
○ HUNGARY(6건)	
-엄격한 품질 검사 제도	41
-까다로운 VISA 취득 절차	42
-외화구좌 보유 제한	43
-암시장 거래에 따른 정상영업 위축	44
-다양한 종류의 부가세 부과	45
-소비재 및 자동차 수입 쿼타	46
○ INDONESIA(3건)	
-건본 제작용 자재 통관상의 애로	47
-불합리한 수출 의무 비율	47
-관세율 구조 개선 요망	48
○ JAPAN(13건)	
-가공식품 방부 첨가제에 대한 과도한 규제	48
-외국산 건축 자재 사용 불허	49

-인삼 캡셀 수입 금지	49
-주재원 체제 VISA기간 연장.....	50
-공공공사 발주 자재 공급업체 제한	51
-일본산 시멘트 사용 표기 강제	52
-부산-토마코마이 간 정기선 부재	53
-유화업체의 독과점 관행.....	54
-식품 통관 검사 지연	55
-주류 소매 허가 제한	55
-마른 김에 대한 수입 쿼터제	56
-단무지 수입 제한	57
-야채, 과일, 식품류 등에 대한 과도한 검사	58
○ JORDAN(1건)	
-카타로그,캘린더 등에 대한 관세 부과	59
○ KENYA(4건)	
-선적전 검사 및 과실 송금상의 애로.....	60
-무역거래 방식의 제한	61
-한국계 은행 미진출	61
-관세환급 기간의 장기화	62
○ MALAYSIA(1건)	
-수입 허가제	63
○ MEXICO(1건)	
-관세 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애로.....	64
○ MOROCCO(4건)	
-수출 보험제도의 활용 제한	65
-수입 허가제	66

-빈번한 통관 지연	67
-외국 투자 업체에 대한 지급 보증 제한	68
○ MYANMAR(3건)	
-수출입 L/C 결제상의 문제점	69
-취약한 투자 환경	70
-투자계획 수립시 기초 통계자료 입수 곤란	71
○ NETHERLANDS(1건)	
-지속적 GSP 공여	72
○ PAKISTAN(1건)	
-기업 활동 기반 취약	73
○ POLAND(3건)	
-은행간 코레스 계약 체결 미흡	74
-승용차 차별 관세 적용	74
-세관의 자의적 상품분류	75
○ RUSSIA(4건)	
-현지 노동, 금융, 세무 관행에 따른 애로	76
-과도한 조세 부담	77
-수송 및 금융상의 애로	78
-운송 수단의 부족	78
○ SAUDI ARABIA(5건)	
-투자 승인 지연 및 외국인 지분 제한	79
-세관 통관상의 애로	79
-지사, 사무소 설치 제한	80
-여행 증명서 발급에 따른 여행 제한	81
-VISA 발급상의 애로	82

○ TAIWAN(1건)	
-이중 과세 및 VISA 취득	83
○ TURKEY(6건)	
-과도한 상거래 정보 요구	83
-통관 절차 지연	84
-운송 수단 취약	85
-불안정한 현지 금융 체제(1)	86
-현지 환경을 고려한 진출 전략 수립	87
-불안정한 현지 금융 체제(2)	88
○ U.A.E(1건)	
-과도한 원산지 증명 발급 인증료	89
○ UNITED KINGDOM(2건)	
-VISA발급상의 애로	90
-기술장벽(규격)	91
○ USA(12건)	
-조미료에 대한 고율관세	91
-전략물자 수출 통제(반도체)	92
-정기선 부족 및 운임 과다	93
-상호주의에 입각한 내국민 대우	94
-배타적 운송 관행	95
-국가안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 제한	95
-건설 시장 진입 제한	96
-사회 보장세	97
-한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강화	98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발급 제한	99

-Earnings stripping 적용	100
-자동차 평균 연비 규정	101

II. 국내 기업의 애로 사항 (43건)103

○ 대외 장벽(16건)

-선적전 검사(동남아)	105
-수출 의무 이행(중국)	106
-수출 대금 결제 지연(이란)	106
-송장에 제품 Serial No. 기재 요구(멕시코)	107
-현지 수입상 및 은행간의 부정 담합(멕시코)	107
-정책 변경 사전 공고 미흡(멕시코)	108
-타이어 국제 공인 규격 불인정(멕시코)	108
-선적전 검사(페루)	109
-지사 설치상의 애로(홍콩)	110
-수산물 수입쿼타(일본)	111
-맛김 수입 제한(일본)	112
-鹽 수입 제한(일본)	113
-기업 운영 의사 결정상의 애로(베트남)	114
-외화 및 원.부자재 조달 애로(중국)	115
-투자관련 정보 입수 곤란(인도)	116
-정책 변동에 따른 애로(스리랑카)	117

○ 대내 장벽(27건)

-해외 투자 인.허가 업무 처리 지연	118
-상품 분류 혼란에 따른 애로	119
-공업진흥청 손실 고시율 미흡	120
-해외건설과 관련된 상충된 국내 제도	121
-산업설비 수출 수주 계획상의 애로	122
-포괄보험 적용 제한	123
-E/L발급상의 애로	123
-중복되는 금융 관리	124
-기술 사용료에 대한 원천과세	125
-해외 프로젝트에 대한 소득 표준을 조정	125
-영세 발주업체에 대한 영세율 적용 확대	126
-Agent 수수료 지급상의 애로	126
-플랜트 수출시 금융상의 애로	127
-연결 재무제표상의 애로	127
-기업의 외화 현금 보유 제한	128
-증권사 해외 사무소 설치 규제	129
-소량 견품에 대한 통관 지연	130
-인삼 마케팅 지원 체제 미흡	131
-인삼 포장 규격 규제	132
-형식적 국내 수출 검사 제도	133
-국내업자 소유 원양 어선의 제3국 국적 취득 제한	134
-축산 사료 수입에 대한 고율 관세	134
-농.수산물 항공 운송 애로	135
-저장 시설 지원 체제 미흡	135
-백합류 구근 수입에 대한 관세환급 불허용	136
-스테이플에 대한 관세 환급 불허	136
-스테이플에 대한 수출 검사	137

I. 해외 진출 기업의 애로 사항

발송번호	9203-0059	발송일자	1994.07.04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입찰참여시 공업규격 문제 (재호 한국상공회의소)		
의견	○ STEEL BEAM, ANGLE 등의 AS(AUSTRALIAN STANDARD)와 IS(INTERNATIONAL STANDARD) 사이에 차이가 있는데 일부 입찰공사에서 AS만을 인정함으로써 외국 업체의 입찰 참여를 실질적으로 어렵게 하고 있음.		
건의사항	○ 정부 입찰의 경우 IS도 인정될수있도록 정부차원의 해결노력 필요.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SYDNEY

발송번호	9203-0058	발송일자	1994.07.04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국제통화료 할인건 (재호한국 상공회의소)		
의견	○ 호주에서 한국으로 전화를 할경우 시간대에 상관없이 일반요금이 적용되므로 호주진출 한국업체들의 통신비 부담가중(미국, 캐나다, 유럽, 뉴질랜드, 일본,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에는 할인가격 시간대 적용)		
건의사항	○ 한국과의 통화에도 할인가격 시간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정부차원 또는 한국통신과 호주의 TELECOM차원에서 협의 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SYDNEY

발송번호	9203-0025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역외금융 제한 (외환銀行)		
의견	<p>○ 호주에서는 본지점간 차입 한도를 자기자본의 6배 범위 내에서 제한하고 동 한도를 초과하는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 세법상 손비로 인정하지 않고 있어 현지 진출 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制約함으로써 영업활동 확대에 制約 요인으로 작용.</p> <p>- THIN CAPITALIZATION 조항적용에 따른 규제 . INCOME TAX ASSESSMENT ACT상의 동규제(본지점 차입한도를 자기자본의 6배범위내로 제한, 동차입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 초과분 차입금에 대한 지급이자는 세무상 손비로 인정되지않아 법인세 추가 부담요인이 됨)로 외국금융기관의 자금조달을 제한하고있음.</p> <p>- WITHHOLDING TAX . 역내금융(ON-SHORE)을 위한 역외(OFF-SHORE)금융시장의 자금차입시 차입금이자에 대한 10%의 WITHHOLDING TAX를 원천과세함으로 상대적으로 조달 COST가 증가, 역내금융을 위한 역외시장으로 부터의 자금차입시 制約되고 있음.</p>		
건의사항	○ 본 지점으로 부터의 차입에 크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외국계 銀行에 대해서는 동조항의 예외로 적용될 수 있도록 여타국과 공동대응 필요		
관련법규	INCOME TAX ASSESSMENT ACT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SYDNEY

발송번호	9203-0027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상사직원에 대한 FBT 부과 문제 (삼성개발)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호주정부에서는 외국의 본사에서 호주내 지사 또는 현지 법인에 일정기간 파견한 직원에 대해서도 회사에서 부담하는 잡세, 식대등에 대해 내국인과 동일하게 FBT(FRING BENEFIT TAX)를 부과할 수 있도록 세법개정 추진중으로 동 세법 개정안이 확정될 경우 주재상사의 조세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예상됨.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재호 한국 상공회의소 차원에서 의회등에 서한을 발송한 바 있으나 정부차원에서 통상장관 회담시 동문제 거론요망 		
관련법규	FRING BENEFIT TAX ASSESSMENT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SYDNEY

발송번호	9520-0073	발송일자	1994.07.04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TV에 대한 고율 관세 (삼성전자)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의 외국산 C-TV(EU, EFTA회원국 생산 C-TV제외)의 수입 관세율이 27.5%로 오스트리아 공산품 평균 수입관세 15.3%보다 아주높은 상태임. ○ 이는 오스트리아에서 자체생산되는 C-TV등 국내 산업보호를 위해 외국산 C-TV에 대해 차별적인 높은 관세를 부과하는 것으로 동제품에 대한 수입관세의 하향조정을 유도함이 바람직함.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 차원의 개별 관세조정 협상을 통해서 또는 GATT규범하에서 현재 오지리와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는 EU, EFTA회원국 C-TV생산, 수출업자들이 누리는 관세혜택을 감안 상당한 수준으로 관세 하향 조정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VIEENA

발송번호	9520-0072	발송일자	1994.07.04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VISA 발급상의 애로 (금성사)		
의견	<p>○ 현재 오스트리아 내에서 유고지역 전쟁으로 많은 수의 난민이 체류하고 있어 오지리 정부는 비자발급 및 연장심사를 까다롭게 하고 있음.</p> <p>○ 그러나 아국 상사주재원의 경우 이들 난민과는 별도로 새로이 운영되는 비자발급 연장 규정에 예외적으로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p> <p>○ 현재 까다로운 비자규정으로 인해 한국 주재상사원의 경우 최고 2-3개월이 소요되는 비자 연장심사 기간 동안 외국으로의 출장 및 기타 주재국내에서의 行爲에 많은 制約을 받고 있음.</p>		
건의사항	○ 유고난민 및 터키 거주민과는 달리 외국 주재상사원의 경우 비자 심사를 최소한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도록 관련내용 조치 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VIEENA

발송번호	9520-0061	발송일자	1994.07.04
수 신 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지사에 대한 사회보장세 부과	(삼성전자)	
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상사가 법적지위를 획득치 못하는 주원인은 동지위가 현지법인 혹은 BRANCH OFFICE로 취득될 경우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를 지불하여야 하기 때문임. ○ 이에 실질적인 판매영업 소득이 없는 한국상사에 대해서는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를 면제하여 동상사들이 합법적으로 오지리 내에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건의사항	○ 합법적인 판매영업 行爲를 하지않고 본사와의 단순한 연락 및 가격 오퍼 등의 비즈니스 行爲를 하는 오스트리아 주재 한국상사에 대해 소득세 및 사회보장세가 면제되도록 정부차원의 조치 요망.		
관련법규			
유 침			
보 고 자	무역관장	무역관	VIEENA

발송번호	9520-0060	발송일자	1994.07.04
수 신 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연금 및 실업 보험 가입 강제	(금성사 지사)	
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스트리아 한국상사의 현지법적 지위가 현지법인 BRANCH OFFICE로 확정될 경우 그 소속 주재원은 의료보험, 실업보험, 연금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 해야함. ○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동 주재원이 소정의 근무기간을 마치고 한국으로 귀입하기 때문에 주재국으로 부터 연금 및 실업수당을 받을 수 없으며 따라서 이는 외국 주재 상사원에 대한 차별적인 제도임. 		
건의사항	○ 스위스와 같이 주재원이 귀국할 경우 동 주재원으로 부터 징수한 연금 보험 및 실업 보험금을 반환하여 주거나 독일과 같이 보험 가입을 면제토록 조치 요망.		
관련법규	일반사회 보장법		
유 침			
보 고 자	무역관장	무역관	VIEENA

발송번호	9503-0020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VISA 취득상의 애로 (무역협회 브뤼셀 지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SA취득을 위한 WORK PERMIT발급에 통상 2개월 이상 장기간 소요 (WORK PERMIT:벨지움 노동성에서 발급, 본인 또는 대리인이 직접 신청) ○ WORK PERMIT받은 사람에 한해 비자발급(가족에 대한 비자발급 제한): 주한 벨지움 대사관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WORK PERMIT를 받은 사람 외에 비자발급이 허용되지 않고있음. 이에따라 현지주재 가족의 경우 VISA없이 입국하여 거주지 COMMUNE(구청격)으로 부터 1개월 마다 체류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 '94년 4월이전까지는 주재원 가족들도 주한 벨지움 대사관으로 부터 VISA를 발급받아 주재원과 동일하게 1년 단위로 I.D CARD를 갱신해 왔음. 이같은 가족들의 체류관련 애로 사항은 최근 부임하는 상사 주재원들의 공통 문제임. 		
건의사항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BRUSSELS

발송번호	9527-0083	발송일자	1994.07.15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대금결제 방식상의 애로 (현대종합상사 지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리아는 한국과의 원거리 위치로(선적기일 約55일) 바이어들의 금융부담이 큼으로 L/C방식보다 D/A방식이나 위탁판매 방식을 더 선호하고 있음. ○ 중계무역에 대해서 해당관세에 해당하는 BANK GUARANTEE를 요구 하고있음.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등 신용판매 방식에 대해서도 수출보험 처리가 강구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불가리아의 지정학적 위치로 보아 중계무역 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BANK GUARANTEE를 없애도록 촉구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SOFIA

발송번호	9527-0016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구체적 인센티브 제도 미비 (IMISCO, BULGARIA LTD)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법은 마련되어 있으나 施行令이 공포되어 있지않아 고기술 산업 및 식품가공산업 등 투자우선 산업에 대한 TAX - HOLIDAY의 구체적 혜택이 施行되지 않고 있음. ○ 투자법의 제정시기 및 TAX HOLIDAY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영업 및 외국인 투자 보호법은 '92.1.16 일 제 36차 불가리아 국회에서 통과되었으나 하부 施行令이 제정되지 않고 있음 - TAX HOLIDAY는 '89년에 제정된 영업활동에 관한 각수 56호 ('89년 제정후 수차례 개정)에 언급되어 있음. - 반면, '93년 동 각령 56호가 개정되어 외국인, 내국인 구별없이 1백만 레바투자까지는 30%의 이익세를 그 이상의 금액을 투자할 경우 40%의 이익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는 재정수입의 증대를 목적으로 하기 위한 것이라함 - 결과적으로 외국인에 대한 인센티브제도가 取弱한 실정이어서 외국인들은 실물투자보다 단기이익을 목적으로 무역업과 같은 서비스분야에 투자하고 있는 실정임 		
건의사항	○ 불가리아의 어려운 경제현실 때문에 실물투자를 외국인들은 당분간 기피하고 있음을 고려 불가리아측이 투자유치를 교섭할 시 불가리아 정부가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를 구체적으로 마련토록 요구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SOFIA

발송번호	9527-0075	발송일자	1954.07.04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외국인 투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도 미비 (대우 지점)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가리아에서의 조립생산의 경우 세제상 혜택이 없음 ○ 불가리아는 외국인 투자를 희망하고 있으나 실제로 투자유치에 앞서 투자환경을 조성하지 못하고 있음. 		
건의사항	○ 부품공급에 의한 현지 생산과 완제품 수입과의 차별관세 필요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SOFIA

발송번호	9527-0014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관세 및 통관상의 애로 (현대 소피아지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재국을 경유 제3국, 인근지역으로 Transit 되는 화물에 대해 동화물이 부가가치 자유무역지대에서 재반출될때까지 해당관세 소비세 및 부가가치세(18%)에 해당되는 Bank Guarantee을 '94. 4.1 부터 요구하고 있음. ○ 이것은 불가리아를 경유하는 장점을 의미없게 할 뿐만 아니라 추가 비용 및 시간이 소요됨으로써 제3국 교역을 萎縮시키고 있음. 		
건의사항	○ 인근 루마니아, 구 유고 연방 CIS등으로 교역되는 RE-EXPORT/ TRANSIT CARGO에 대한 B/G조항 삭제요망. 관세법으로 명문화 된것은 없지만 불가리아 세관측 내부훈령/施行令으로 적용되고 있음('94.4.1일 부터)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SOFIA

발송번호	9312-0017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GPT 수혜기간 연장 (현대자동차 지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한국은 GPT수혜 대상국으로 자사 브랜드로 수출되는 완성차에 대해 6.0%의 관세가 부가되고 있으나 한국이 GPT수혜 대상국에서 제외되는 경우 자동차 일반관세가 9.2%에 이어 현재보다 3.2%포인트의 관세부담이 늘어 나게 됨. ○ 이는 원가부담 및 가격경쟁력 弱化로 여러가지 불리한 결과를 초래할 것임. 		
건의사항	○ 향후 한국이 계속해서 GPT수혜 대상국으로 남을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측에 요청이 필요.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TORONTO

발송번호	9312-0018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GPT수혜기간 연장 (대우전자 지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전자제품중 주요 수출품목인 컴퓨터용 칼라 모니터의 경우 한국산은 GPT혜택을 받아 무관세인 반면 대만산은 3.9%의 수입 관세 부담중이므로 지속적인 경쟁력 유지를 위해 GPT연장 필요. 		
건의사항	○ 향후 한국이 계속하여 GPT수혜 대상국으로 남을수 있도록 캐나다 정부측에 요청 필요.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TORONTO

발송번호	9417-0042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VISA 발급상의 애로 (삼성전자)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88년 양국간 입국사증(VISA)면제 협정이 파기됨에 따라 현재 칠레를 방문코자 하는 한국 비즈니스 출장자는 칠레 주재 상대방 회사로부터 초청장을 받아서 주한 칠레 대사관에 입국비자 신청을 하고 있음. ○ 통상 10여일이 소요되는 VISA취득 기간이 본국 조회를 하게 되면 상당기간 지연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긴급한 상황에서 방문하게 되는 한국 출장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다수 발생. 		
건의사항	○ 칠레정부가 신뢰할 수 있는 칠레 주재 한국업체 등이 초청장을 발송하는 경우에는 주한 칠레대사관에서 본국조회 절차를 간소화 하여 비자발급이 원활하게 이루어 지도록 정부차원에서 노력 필요.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SANTIAGO

발송번호	9124-0105	발송일자	1994.08.18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수출 대금회수 불확실	(효성물산 북경지점)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율적인 민간경제에 의하여 거래가 성사되기 보다는 중국정부의 정책방향에 의하여 거래의 방향이 설정됨 ○ 정책의 변경에 따라 緊縮정책 및 수입규제 발생시 잦은 대금결제 지연 및 부도 발생 ○ 아직 중국의 銀行제도가 완전히 정착되지 못하여 대외 결제기관으로서의 신용도가 아직 부족한 상태임. ○ 결과적으로 L/C에 근거한 선적履行후 대금결제가 담보되지 않아 수출상으로서의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빈번함.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 수출의 활성화를 위하여 결제에 대한 확실성이 필요한 바 특정지역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이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별보험 및 포괄보험 보험료의 인하(정부의 지원 필요) - 보험금 지급율을 90%에서 상향 조정 - 정부차원의 협의창구 상설화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BEIJING

발송번호	9124-0104	발송일자	1994.08.18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수출대금 회수 불확실 ((주)코오롱북경사무소)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장을 개설하고 물건을 선적후 중국 바이어 측에서 일방적으로 銀行에 PAYMENT 하지 않아도 받을 방법이 없음. (L/C 개설에도 불구하고 銀行에 돈을 입금하지 않음) (銀行, 세관, BUYER가 같은 편임) - MARKETING 상황이 나쁘거나, 마지막 거래시 특히 발생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차원에서 취소불능 신용장의 국제적인 관례대로 履行토록 협조요망 (입금후 B/L로 물건 수취) ○ 일방적인 경우와 아닌 경우(CLAIM)가 있는데 일방적인 경우는 銀行에서 PAY토록 정부차원에서 건의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BEIJING

발송번호	9124-0103	발송일자	1994.08.18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노동조합 강제설립 ((주)코오롱북경사무소)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중국정부에서 천진, 칭도, 대련지역 한국 투자업체에 연말까지 강제로 노동조합 설립을 강요하고 있으며, 履行치 않을시 강제 출국 조치하겠다고 엄포하는 상황임. ○ 중소 MAKER에서는 한국에서의 노동자 파업경험이 되살아나서 투자를 미루고 있는 상태임. ○ 현재 중국 전체 외국투자기업중 노동조합 설립 履行率이 10% 미만이며, 특히 대만, 홍콩 투자업체는 거의 노동조합을 설립하지 않고 있음. ○ 중국 노동법이 한국실정과 틀리며, 너무 무리한 요구사항이 많으며 특히 파업을 법으로 인정하고 있는 실정임. ○ 천진에서 의용노조가 계속적으로 한국기업만 돌아가며 파업을 進行중임. 		
건의사항	○ 정부차원에서 대만과 홍콩과 동일한 조건履行을 유지토록 협조요청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BEIJING

발송번호	9124-0102	발송일자	1994.08.18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대금 지급지연 및 제품 인수거절 (POSCO ASIA CO.LTD)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중국 철강제품 수출시 수출대금 지급지연 사례가 빈번히 발생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도착후 대금지급없이 세관의 협조로 제품인수, 사용, 상당기간 대금지급 지연 ○ 또한 제품인수 거절 사례도 상당수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선적후 SHIPPING DOCUMENTATION상 하자(경미한DISCREPANCY)이유로 제품인수거절 - 특히, 契約당시와 제품도착시 큰폭 가격변화 발생시 빈번(일종의 MARKET CLAIM)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차원의 중국銀行 및 세관관리 강화 공식요청 ○ 부당하고 비도덕적인 商行爲 판단시 근본적으로 대처할수 있는 제도장치 시급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BEIJING

발송번호	9124-0101	발송일자	1994.08.18
수신처	지역조사부장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통관 지연 및 금융 처리 지체 (포함제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 소요일수가 길어 자재공급이 적기에 안되므로써 가공후 제품 납기 차질 발생(대부분 수출품은 납기가 TIGHT함) ○ 銀行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銀行의 완만한 업무進行으로 인한 피해가 자주 발생 - 수입자재 대금 L/C 개설이 늦어 공급자로부터 불신을 받고, 자재를 적기 공급받지 못해 생산계획 차질 발생 - BUYER로부터 T/T 물품대금의 입금까지의 시일이 너무길어 운전 자금 적기활용에 지장초래(외국銀行 1-2일, 중국銀行 7-10일) - 북경소재 외자기업이 타지역 외국銀行 구좌개설시 외환관리국 허가를 득해야 하고 실제 허가받기가 아주 어려운데 자기자금을 기업자체에서 마음대로 장악을 못하는 불합리성 빨리시정되어야 할 것임 		
건의사항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BEIJING

발송번호	9124-0100	발송일자	1994.08.18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신용장 통일규칙의 위배 (포항제철)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장 통일규칙의 위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용장 하자를 銀行 또는 APPLICANT가 임의로 조작하는 사례가 빈번함. - 신용장 통일규칙상 하자통보를 '7 WORKING DAYS LOAN' 하기로 되어 있으나, 시장가격의 등락에 따라 3 WEEKS - 1.5MONTHS후에 하는 경우가 빈번함. ○ 대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최우선 APPLICANT를 설득(가격적인 면의 양보요청) - 銀行 SIDE 직접 접촉하여 설득하고 銀行이 APPLICANT를 설득 - 변호사를 선임, 銀行에 직접 CLAIM하는 방법 - 중재위원회에 제소 * 문제유형이 국제 상관례를 무시하는 경우에는 둘째, 셋째선에서 해결하나 APPLICANT에 문제가 있을경우는 첫째, 둘째 선에서 해결함. 		
건의사항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국 상공인회를 경유, 강력히 항의할 수 있는 LINE-UP필요 (한국상사 총체적으로 대응) 2. 한국내 중국銀行(중국銀行, 건설銀行, 공상銀行) 관계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대응방법 강구(자금동결 등)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BEIJING

발송번호	9415-0081	발송일자	1994.07.12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승용차에 대한 고관세 (CORPORATION COSKOA)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타리카의 외국인 투자회사의 경우 승용차 구입은 필수적인 데에 반해 코스타리카의 경우 승용차의 수입관세가 통상 100%이상으로 큰부담이 되고 있음. 따라서 일정수준 이상 투자한 투자가에 대해서 최소 1대의 승용차를 면세로 구입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타리카 정부는 현지화 10,000콜론(US\$70,000수준)이상 투자한 해외투자가에 대해서는 일부 특혜를 주고있는바 동 해외투자가가 원하는 경우 승용차 1대에 대해서 면세로 구입할 수 있도록 해외투자 관련 법규에 법적근거 마련 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SAN JOSE

발송번호	9415-0080	발송일자	1994.07.12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면세 통관품 처분 제한 (TEXCON S.A)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타리카에 투자하고있는 대부분의 한국인 업체는 봉제업이며 고정바이어로부터 원단을 제공받아 각종 의류를 생산하고 있으며 재수출용으로 수입되는 원자재 및 관련 기자재에 대해서는 면세 통관의 혜택을 받고 있음. ○ 그러나 수입된 면세 통관품들에 불량이나 잉여분이 발생할 경우 처리절차가 매우 복잡함. <p>-일례로 여자용 원피스 300벌을 만들수 있는 원단을 일단 인수한후 바이어의 사정에 의해 200벌만 생산하고 나머지 100벌에 해당하는 원단을 현지에서 처분하여야 할 경우 처리절차가 매우 까다로우며 면세로 통관된 미싱을 점검한 결과 불량품으로 판정되어 사용치 못하고 창고에 보관만 하고 있을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후에도 처분할 수가 없어 면세통관품의 관리가 어려운 상황임.</p>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면세로 통관한 기계류가 타당한 사유에 의해 사용치 못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간이 지난후 처분 또는 폐기 처분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 원단의 경우는 본래의 관세율 보다 인하하여 판매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토록 코스타리카 정부에 조치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SAN JOSE

발송번호	9415-0079	발송일자	1994.07.12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복잡한 투자진출 절차 (CORPORATION COSKOA)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코스타리카에 외국인 투자승인을 득한 후 한국인 기술자입국 및 장기체류를 신청할 경우 신청후 거주 승인을 득할때까지 통상 6개월이 소요되고 있음. ○ 신청시 13개 이상의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데 이 중에는 중소기업에서 작성하기에도 장시간 소요되는 서류도 있으며 변호사 공증을 각각 받아야 하는데 서류당 10,000콜론 (約US\$65)을 지불해야 함. ○ 참고로 기술자 장기체류시 신청해야할 서류는 다음과 같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1. 기술자 기능증명서 (공증을 받아야함) 2. 신원증명서 (코스타리카 변호사로 부터 공증을 받아야 함) 3. 여권사본 및 사진 4. 외국투자허가서 사본 5. IMMIGRATION VISA 신청서 6. MIGRATORY VISA 신청서 7. 노동허가 신청서 8. 무범죄사실증명서 (최근5년간 거주한국, 한국 및 코스타리카내) 9. 고용契約書 10. 제3국 고용자는 코스타리카 고용자수의 10% 이내에서 고용하겠다는 契約書 11. 코스타리카내 銀行입금 증명서 사본 <p>상기 신청서류중 기술자 기능증명서는 봉제업체의 경우 한국내에서 발급하는 제도가 없어 증명서 첨부에 어려움이 많으며 상기 서류도 코스타리카내 변호사로 부터 각각 공증을 받아야 하므로 서류 신청시 소요되는 금액만 1인당 US\$500이상이 되고 있음. 또한 동 신청서류는 반드시 영어가 아닌 서반어로 작성하여야 함에 따라 작성시 애로가 큼.</p>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청서류의 간소화 ○ 기술자 증명서, 신원증명서는 투자업체 사장의 보증만으로 변호사 공증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제도화 할 것. ○ 신청서류에 무범죄 사실증명서 제출을 제외시키고 투자업체 사장이 보증하는 신원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것. 그러나 반드시 동 증명서가 필요하다면 투자업체 사장의 증명서로 대신할 수 있도록 할 것. ○ 제3국 고용자는 코스타리카인 고용자의 10% 이내에서만 고용 가능하다는 制約조건 삭제 (니카라과, 엘살바돌 노동자를 고용할 경우 양질의 노동자를 최저 임금으로 고용 가능)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SAN JOSE

발송번호	9529-0071	발송일자	1994.06.30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자동차에 대한 차별관세 적용 (현대종합상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체코 자동차 수출시 관세적용상의 불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산 15.2%,기타(한국포함)19%적용 -동관세 적용상의 격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전망 -EU에서 생산활동을 하는 미국,일본 업체는 문제가 없으나 한국산의 경우 가격경쟁에서 크게 불리. 		
건의사항	○대체코 통상협상시 의제 제기 필요.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FRAGUE

발송번호	9504-0120	발송일자	1994.08.23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수출보험 운영상의 문제점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덴마크는 L/C발급 銀行 수수료가 과다하여 많은 수입상, 특히 소규모 수입상들은 L/C거래를 기피하고 CHECK BASE, OPEN ACCOUNT BASE등을 원하고 있음. ○ 그러나 한국업체들은 거래관계가 수년간 지속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L/C거래를 고집하고 있어, 그 이유를 해당업체에 문의한 결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EXPORT CREDIT INSURANCE제도가 일천하여 사고발생시 충분한 보상받을 수 없는 경우가 많고, 독점공기업으로서 서비스가 좋지 않으며 - D/P거래시 바이어가 지불지연하면 한국의 銀行들이 지불지연 과태료를 일반금리보다 매우 높게 책정, 부과시키고 있으며 바이어가 DUE DATE에 입금시킨다 할지라도 동 지불액이 한국의 해당 거래銀行에 입금되기까지는 3-5일이 소요되어 매 D/P거래마다 지불지연 CHARGE를 지불하여야 하는 비용부담이 있고 - 무역금융등 사후관리제도가 L/C방식 우대위주로 마련되어 있기 때문이라 함.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험기관을 복수화하여 서비스 경쟁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 D/P거래시 발생할 수 있는 지불지연 경우 지불지연 CHARGE를 일반 대출금리 수준화하고 ○ 무역금융등 사후관리제도를 지불조건에 관계없이 동등하게 적용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COPENHAGEN

발송번호	9704-0013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통관 및 투자 허가 지연	(금성사 지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세통관상의 애로: 통상 관세환급에 최소 3-6개월 소요되며 환급관련 절차가 복잡하고 수출후 수출확인서 발급에 10일 이상 소요됨. ○ 사회주의 경제체제인 이집트는 공무원들의 업무 숙지도가 낮아 담당직원 조차 환급 절차를 모르는 경우가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용 원자재 수입시는 반드시 신고 하여야 하며 미신고시 관세 환급이 불가하므로 소요량 단위로 환급되는 것이 아니고 수입수량 만큼만 환급이 되고 있어 환급액이 실소요액에 미치지 못함. - 환급기관: INDUSTRIAL AUTHORITY ○ 수입절차 장시간 소요 선적품 입항후 물품검사에 10일 이상 소요되고 있으나 선박회사가 입항 후 허용하는 무료 체류 가능한 기간은 7일 이므로 수입상이 수출품 검사를 받기위해 추가 체류하는 기간만큼 추가 비용을 지불해야함. ○ 현지 투자시 신청후 3-4년 소요후 허가취득 ○ 현지주재 연락 사무소 영업행爲금지 		
건의사항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카이로무역	무역관	CAIRO

발송번호	9518-0123	발송일자	1994.09.06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규격인증 취득 기간 지연	(삼성전자 파리지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프랑스는 신규로 프랑스에 도입되는 제품에 대하여 규격인증 취득 토록하고 있으나 - 규격인증 취득을 위한 신청접수에서 부터 시험 및 승인까지의 기간이 과다함. ○ 특히 전자제품의 경우 제품의 Life Cycle이 짧아 수시로 새로운 제품이 개발 판매되고 있는 상황에서, 규격인증 취득에 6-7개월이 소요되는 것은 실질적인 수입규제 역할을 하고 있음. 		
건의사항	○ 규격인증 신청접수 및 시험절차의 개선을 통한 신속한 승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간 협상 요망		
관련법규	프랑스 규격인증(NF : Norme Francais)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PARIS

발송번호	9508-0023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체류 VISA 발급기간 연장 (함부르크 요식업회장)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독일은 외국인 취업 노동자에 대하여 1차에 1년, 2차에 2년 등 총3년에 한해서만 체류비자를 발급해 주고 있으며 이는 값싼 외국인 노동자의 무제한적 입국 내지 체류를 막고 나아가 자국민 취업기회를 보장 한다는데 그 취지가 있음. ○ 국제 관례상 대개 이와 유사한 외국인 취업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으나 취업 형태와 성격에 따라서는 예외적인 대우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음식이란 숙달된 주방인의 기술蓄積에 기인하나 독일 외국인법은 3년체류와 그후 3년이내 재초청 불가로 규정하고 있음.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 식당의 경우 요리사는 한국인 이어야 한다는 일반적 명분이 성립하므로 고용契約이 살아있는한 체류 허가를 연장해 주도록 협상시 반영 요망. ○ 주방장 한사람에 한해서 만큼은 체류기간을 자유롭게 하여야함.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HAMBURG

발송번호	9506-0129	발송일자	1994.09.23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ANTI DUMPING 조사 남발 (럭키골드스타현지법인)		
의견	○ 단순한 역내 산업 보호원칙 또는 이해 관계자의 의견을 무시하지 못한다는 사유만으로 ANTI DUMPING 조사를 행하는 등 근거없는 제소로 인한 피제소측의 피해가 큼.		
건의사항	○ 공식적 ANTI DUMPING 조사 이전에 제소 사항에 대하여 자체 사전조사를 施行하여 제소된 사항이 타당성이 있는지 검토후 타당성이 있을 경우에만 본조사를 施行하여 근거없는 제소에 대해 피제소측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할 것		
관련법규			
유첨	럭키.골드스타 현지법인 신고서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FRANKFURT

발송번호	9506-0128	발송일자	1994.09.23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국별로 다른 규격 승인기준 (럭키골드스타현지법인)		
의견	○ EU내 각국에서 제품 규격승인기준 등을 달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품목에 대하여 각국 규격승인을 별도로 받아야 하므로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첨단제품일 경우 규격승인 신청 기간중에 벌써 기술, 디자인 등이 낙후되어 동제품의 시장성이 없어져 새제품을 다시 승인 신청해야 할 경우가 있을 정도임.		
건의사항	○ EU내 규격승인은 단일규격으로 통일되거나 역내 국가중 한국가에서 일단 승인을 받은 제품은 다른 국가에서도 인정해 주도록 협상 필요함.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FRANKFURT

발송번호	9506-0127	발송일자	1994.09.23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GEMA Charge 부과	(금성사 현지판매법인)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MA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GESELSCHAFT ZUR VERWERTUNG MUSIKALISCHER AUTORENRECHTE의 約字로 음악저작권 보호협회에서 부과하는 CHARGE 임 - 해당법규 : 저작권 보호법 - 부과대상 : 녹화녹음기와 TAPE류 및 공공장소의 음악연주나 영화 방영등 - 부과시점 : 제품관련 - 현지생산법인은 공장 출고 시점에, 수입업자는 통관시점 공연장 관련 - 공연장의 규모나 공연시간등을 감안하여 개별적으로 부과. ○ 금성사 제품에 대한 부과내용 : VCR은 대당 18DM, AUDIO(녹음기)는 대당 2.5DM, AUDIO TAPE는 시간당 0.12DM, VIDEO TAPE는 시간당 0.17 DM을 부과함. ○ 문제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부과되고 있는 GEMA CHARGE는 제품의 시장가격과는 관계없이 개당 일정액 부과기준으로 되어 있음. - 과거 제품이 어느정도 비싼가격으로 판매될 때에는 GEMA CHARGE가 COST에서 차지하는 PORTION이 상대적으로 적어 문제가 크지 않았으나 제품의 시장가격이 상당히 인하된 상태에도 예전과 동일하게 일정액을 부과한다는 것은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특히 VCR의 경우) ○ 최근 PHILIPS는 송하 및 SONY사와 함께 GEMA CHARGE부과에 대한 의의 제기를 위해서 조만간 대책회의를 갖을 예정인 것으로 알려짐 		
건의사항	○ GEMA CHARGE 부과제도의 불합리한 점을 개선할 수 있도록 협상필요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FRANKFURT

발송번호	9506-0126	발송일자	1994.09.23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부당한 반덤핑 관세부과(Floppy, Audio Disk) (SKC 현지법인)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과의 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의 Market Share가 1.24 - 1.44%(SKC 제시자료 기준) 또는 1.6% (제조사 자료기준) 감안할 때 EU기준에 의하여 거의 무혐의 판정 혹은 조사 중지 결정이 내려져야 함(EC 규정 : Market Share 1.5%이상 이 되어야 조사 가능) ○ 그러나 EU측은 제조사측의 주장(수입증대로 가격하락 → EU 산업 피해 → 손익악화)을 일방적으로 수용하여 8.2%의 잠정관세 부과 결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실제로 가격하락의 주원인은 중국 및 홍콩산의 대량유입(제조사들도 중국이나 홍콩에서 대량수입하여 판매가격 하락유도) 및 EU 역내 제조사들의 대량증설(조사기간중 제조사들의 증설은 2.5배 수준)로 인한 공급과잉에 기인함. - 한국산과 홍콩산의 가격 차이나 Sales Channel의 차이 등은 불인정하여 독일측 개념으로만 계산하여 부과함. 		
건의사항	○ Anti Dumping 관세부과의 부당성이 시정될 수 있도록 협상 필요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FRANKFURT

발송번호	9502-0099	발송일자	1994.08.17
수신처	지역조사부장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현지 교민 체류허가 연장 (서울식당)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과 그리스간에 비자면제 협정이 체결되어 있어 무비자로 3개월간 체류가 가능하나 현지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교민들에게 그리스 정부가 장기체류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어 매 3개월마다 인근국에 갔다와야만 하는 실정임 ○ 따라서 현지에서 자영업을 경영하는 많은 교민이 체류허가 문제로 애로를 겪고 있음.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부가 교섭을 통해서 당지에서 생업에 종사하고 있는 한국 교민들에게 장기 체류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치가 요망되며 불가할 경우 체류 허가기간을 現行 3개월에서 최소한 1년으로 연장할 수 있도록 교섭필요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ATHENS

발송번호	9105-0011	발송일자	1994.06.28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차류 수입시 까다로운 검역절차 (한국 수입의 경우) ((주)태평양)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 구주 미.일등의 국가에서는 멸균처리된 茶류를 수입할 경우 식물 검역증 제출을 생략하고 있음. 이는 茶류가 일반 농수산물과는 달리 제조공정상 멸균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한국세관측에서 茶類검역시 중국정부로부터 발급된 식물검역증을 제출토록 요청한것은 판단착오로 간주됨. ○ 관세법상 사전 공표되지 아니한 검역증의 제출요청으로 지난 4월 부산도착된 6MT를 다시 반송한 사례가 있으며 이로인해 재생산에 들어간 茶類의 검역증 발급은 중국내의 복잡한 절차로인해 1달여 지연, 한국에서의 생산 판매일정에 큰영향을 미침에따라 막대한 피해를 봄 		
건의사항	○ 한국세관(검역소)에서 중국정부 발급의 식물검역증 제출을 생략하는 방안을 제도 또는 법규적측면에서 검토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HONGKONG

발송번호	9524-0050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엄격한 품질검사 제도 ()		
의견	<p>○ 품질검사(안전,표준,인증)제도 강화로 인한 통관지연 및 추가비용 소요('93.1.10발효)</p> <p>-국제기관의 검증품목도 재검사를 받아야 하며 동일품목의 경우도 수입업자가 다를경우 수입업자별로 별도의 검사를 받아야 하는 등 기술 장벽화되는 경향</p> <p>-법정 소요기간은 30일 이내이나 관련 검사를 모두 마치려면 통상 3개월이 소요되며 상당한 부대비용 초래</p> <p>*신규모델 가전제품의 경우:3-4개월 기간,約3,000US\$소요 .MEEI의 전기 안전 검사(約3개월, 2,000US\$),POST의 전파검사(1-2주, 約400US\$),KERMI의 최종 품질 검사(1-2주,約600U\$)등의 시간 및 추가 비용 발생</p> <p>-신규모델 소개 시간 및 소규모 시장성을 감안할 때 과다함.</p> <p>-헝가리보다 더 높은 수준의 인증 획득 품목에 대한 불합리한 재검사, 동일 품목의 수입 업자별 재검사, '90년대 후반까지 헝가리의 품질검사 수준을 EU 수준으로 향상시켜 EU 규정을 적용키로 한 EU 준회원국 협정등을 감안할 때 모든 품목의 재검사는 당초 법개정 목적인 품질 및 소비자 보호를 넘는 수입제한 조치 성격</p>		
건의사항	○ 유럽 및 국제기간 인증 품목에 대한 추가검사 면제조치 요청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BUDAPEST

발송번호	9524-0049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까다로운 VISA 취득 절차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에 대한 장기체류 사증 및 노동허가 발급 요건 강화로 영업활동 지장초래('94.5.1발효) - 체류 신청서에는 소속회사 관련서류(등기, 납세증명 등) 및 본사 근무확인서 뿐만 아니라 노동허가서, 직무遂行관련서류(통상 최종학교 졸업증명서로 대), 건강진단서를 새로 첨부해야 함 (1년단위 발급, 동일 절차에 의한 연례갱신) - 특히 외국인 투자업체의 경우 정관상 이사급 이상을 제외한 모든 외국인은 노동허가 및 혈액검사(AIDS검사)가 의무사항으로 되어 노동허가 발급거부 및 건강상의 이유로 체류거부(실질적인 출국조치)를 할수있게 되어 신분상의 불확실성이 높아짐. - 이외에 비용이 일인당 최소한 US\$100이 소요, 근무자 및 가족수, 연례 갱신을 감안할때 상당한 추가비용 - 신청서 접수(4-5시간), 발급(1개월)에 장시간이 소요되고 신청도 당사자가 직접해야 하므로 영업활동에 지장초래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정부의 선별적 재량권으로 우리 투자진출기업에 대한 융통성있는 조치 필요 - 동법의 개정목적이 루마니아, 우쿠라이나, 세르비아, 중국등 주변국으로 부터 유입되는 불법 체류 및 노동자 억제책이므로 한국 기업인에 대한 융통성 있는 재량권 적용이 요청됨.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BUDAPEST

발송번호	9524-0048	발송일자	1948.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외화구좌 보유제한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현지 법인은 외화구좌를 보유할 수 없어 수출거래 대금 수취시 자동적으로 현지화(FORINT)로 환전되므로 수수료 및 평가절하로 인한 손해액이 상당함. - 중동구 국가의 외화부족 및 상거래상 통상 180일 D/A, D/P로 거래가 이루어 지므로 환차손에 항상 노출되어 있는 상황임. *FORINT화 평가 절하 추이(91:21%, 92:5.4%, 93:15%) - (주)금성사의 경우 '93년도 경상이익 130만불중 120만불의 환차손을 경험함.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인 투자회사의 경우 외화구좌 보유 전면 허용조치 요청 - 전면 허용이 어려울 경우 1단계로 내국거래가 아닌 제3국 수출거래 대금에 대한 외화 보유는 허용되어야 함. *체코의 경우 금년 4.1부터 외화구좌 보유허용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BUDAPEST

발송번호	9524-0047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암시장 거래에 따른 정상 영업 위축 (삼성.대우전자,금성)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의 암시장 거래가 활발하여 특히 소비재 수출의 경우 정상적인 유통구조를 통해서는 가격경쟁력 상실로 영업활동 지장 초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VIDEO TAPE, TV의 경우 암시장 가격이 정상 유통가격 보다 30%이상 저렴함. - '94년초 집중단속 이후 5월 총선등의 영향으로 암시장이 다시 활발해져 현지 법인의 매출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임.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 정부의 지속적인 암시장 거래 단속 요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의 대형 수출상품이 전기.전자 제품 등 소비재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암시장은 정상 영업활동에 상당한 장애초래 - 헝가리의 외국인 투자 지속유치, 유통구조개선, 세수증대 등 헝가리의 경제발전을 위해서라도 불법 유통채널에 대한 단속 강화 필요 		
관련법규	DECREE NO 6/1990(4.5)MEM, DECREE NO 4/1994(1.14)IKM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BUDAPEST

발송번호	9524-0046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다양한 부가세 부과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품통관시 재정수입 목적의 수입검사세 2%, 통계세 3% 및 수입허가 품목인 경우는 수입허가세 1%를 부가하여 수입가격 상승. ○ 더구나 헝가리와 자유무역협정 체결국 및 슬로베니아에 대해서는 '95년 부터 연차적으로 수입 부과금을 減縮 '97년에 철폐되어 우리나라등 역외국의 가격 경쟁력이 악화될 것임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유무역협정 체결국에 대한 수입부과금의 철폐는 동부과금이 수입장벽 및 재정수입 목적임을 나타내는 것이므로 역외국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철폐되어야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정국에 대한 수입 부과금 철폐 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입허가세: '95년 철폐 . 수입통계세: '95년, '96년, '97년 각각 1%씩 철폐 . 수입검사세: '96, '97년 각각 1%씩 철폐 <p style="margin-left: 40px;">*GATT제8조: 과징금은 제공된 용역의 적절한 비용 이내에서 부과되어야 하며 국내 산품을 보호하거나 재정상의 목적을 위해 부과되어서는 안됨.</p>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BUDAPEST

발송번호	9524-0131	발송일자	1994.10.1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소비재 및 자동차 수입쿼타 (현지법인 및 상사공통)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헝가리의 쿼타제 운영에 따른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비재 및 자동차에 대한 쿼타배정시 '92년 하반기부터 자유무역 협정국에 대해서는 별도의 쿼타를 배정함으로써 역외국의 수출 기회 상실 - 협정국에 대한 SUB-QUATA 배정내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년 : 전체쿼타(750백만불)의 48% 수준 . '94년 : 전체쿼타(750백만불)의 55% 수준 ○ 한국 수출상품에 미치는 영향(EX, 신형 승용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년 : 총쿼타량 79천대(SUB QUATA : 44.6천대) . '94년 : 총쿼타량 68천대(" : 44천대) ○ 별도 쿼타의 운영으로 현재의 한국수출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으나 협정상 별도쿼타량의 매년 10% 상당증액, 대협정국 수입상품에 대한 관세인하('95년부터 대부분 자유화)로 상대적 경쟁불리 요인으로 작용예상. 특히 협정국의 SUB-QUATA 소진시 역외산의 쿼타량도 소진이 가능하므로 시장 장애요인 작용 예상 		
건의사항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BUDAPEST

발송번호	9106-0064	발송일자	1994.06.30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건본 제작용 자재 통관상의 애로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 제작용 자재 및 생산용 긴급자재의 통관도 일반물품 통관과 같은 절차를 적용, 비용 증대요인 발생 ○ 생산용 긴급자재의 신속한 공항 통관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본 제작용 자재는 MASTER LIST에 의한 통상수입 방법과는 달리 업체별로 한도를 정하여 공항에서 무환으로 바로 통관하여 수출업체의 기동성과 경쟁력을 살릴수 있도록 요청함. ○ 생산용 자재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실에서 필연적으로 발생 하는 긴급자재는 업체별로 QUOTA를 정하여 그범위내에서는 MASTER LIST수입과는 별도로 공항에서 즉시 통관할 수 있도록 요청함. ○ 상기 2건의 경우 대부분이 HANDCARRY로 들어오기 때문에 발송비나 비공식 통관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됨.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JAKARTA

발송번호	9106-0063	발송일자	1994.06.30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불합리한 수출의무 비율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자유지역내에 위치한 기업의 수출의무율인 75%는 해당공장에서 생산하는 모든제품 MODEL의 75% 수출기준인데 동기준을 충족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함.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당기업의 전체생산액의 75%로 기준을 변경하는것이 바람직함.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JAKARTA

발송번호	9106-0062	발송일자	1994.06.30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관세율 구조 개선요망 ()		
의견	○ 수출자유지역에 위치한 회사가 내수판매를 할 경우 수입 원자재에 부과되는 관세율이 그 원자재에 부과되는 원래의 관세율이 아닌 그 원자재를 사용하여 제조된 완제품에 부과되는 관세율로 변경 적용됨		
건의사항	○ 내수 판매시도 원 관세율이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JAKARTA

발송번호	9125-0115	발송일자	1994.08.1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가공식품의 방부첨가제에 대한 지나친 규제 ()		
의견	○ 가공식품의 방부첨가제인 솔빈산, 안식향산 등에 대해 지나치게 엄격한 규제가 실시되고 있음. - 안식향산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식품중 수입이 가능한 것은 캐비어, 마가린, 청량음료수, 시럽, 간장뿐임. - 솔빈산 함유식품(라면 등)에 대해서는 일체 수입이 금지됨. - 동 규제는 식품위생법 제6조에 근거하고 있으나 세부사항은 각 지방 검역소가 판단, 施行하고 있음.		
건의사항	○ 가공식품 첨가제에 대한 기준완화 요구		
관련법규	식품 위생법 제 6조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SENDAI

발송번호	9125-0114	발송일자	1994.08.1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외국산 건축자재 사용불허 ()		
의견	○ 建築자재(파이프서포터, 보조서포터 등 建築구조물)는 노동안전 위생법 제42조에 의거 가설공업회의 인가를 받아야만 建築物 시공이 가능하나 직수입한 외국산에 대해서는 인가해준 사례가 없음.		
건의사항	○ 수출국의 안정성 검사로 사용가능토록 조정 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SENDAI

발송번호	9125-0112	발송일자	1994.08.1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인삼캡셀 수입금지 ()		
의견	○ 인삼캡셀의 경우, 건강식품으로 분류되지 않고 醫藥品으로 규정되어 수입불가 - 근거규정인 藥師法 제1장 총칙의 제2조(정의)에서는 식품과 醫藥品의 구분은 사용방법,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통상인이 醫藥品으로 인식하는 것으로 되어 있음. - 로알젤리캡셀은 건강식품으로 분류되어 있음.		
건의사항	○ 로알젤리와 같이 건강식품으로 분류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SENDAI

발송번호	9120-0119	발송일자	1994.08.1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주재원 체재비자 기간 연장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주재원의 체재비자 기간이 1년으로 주재기간(공기관 : 평균 3년, 사기업 : 평균 4-6년)에 비해 지나치게 짧음. - 1년 단수비자이기 때문에 업무로 출국하는 경우 재입국비자를 받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 및 비용이 소요됨. - 비자 갱신시는 급여증명, 銀行거래 관계 서류제시를 요구하며 본인은 물론 가족도 함께 출입국 관리소에 나가 기다려야 하는 불편을 겪어야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주재원의 신분을 무시하는 질문(가족들의 소득활동 등)을 받는 사례도 있음.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재원 체류비자기간을 최소한 2년으로 연장 - 상호주의에 의거, 주한 일본상사주재원에도 現行 일본과 같은 체재기간 부여 ○ 법무성 외국인 담당 창구 직원의 소양교육 요청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AGOYA

발송번호	9120-0108	발송일자	1994.08.1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공공공사 발주 자재 공급업체 제한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공사 발주시 자재공급업체를 일본업체로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있음. - 공공 공사용 철강의 경우 MIL SHEET(철강제조 공장에서 철강의 화학적, 물리적 성분을 테스트한 후 발급하는 서류) 첨부 요구로 소재공급업체의 확인을 가능케 함으로써 대부분의 일본건설, 토목업자가 시공의뢰자 및 경쟁업자의 눈을 의식하여 수입재 사용기피 - 철강재 외측에 회사명등을 표기하도록 하는 S/MARK제로(일본고로사는 '94.4월부터 실시중)외관산 외국산의 구분가능(고로사들간의 담합 가능성 큼)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IS 승인 취득제품은 내, 외국산을 불문하고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도록 공공기관에 대한 行政지도 필요 - 공공 공사시 외국산 자재의 최소사용 비율을 결정하여 통산성 또는 건설성이 고시하고 不履行시 제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 S/MARK표시 부착제도 폐지 요청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AGOYA

발송번호	9120-0107	발송일자	1994.08.1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일본산 시멘트 사용 표기 강제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 공사에 참여하는 건설회사의 경우 설계도상에 "일본산 Cement를 사용하는 JIS허가 레미콘 공장의 제품"임을 명기하는 慣行이 있음. - JIS허가를 획득한 레미콘 공장의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관청, 특히 지방관청 등에서는 일본제품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음. - 공공 공사용 Cement 납품을 위한 레미콘 품질 등록시 사용Cement의 성적표를 제출해야 하는데 납품자격을 부여하는 관청이 업자들에게 일본산을 사용하도록 강요하고 있음. - 만일 외국산 Cement를 사용할 경우 공사에 수반된 제반 감독, 승인등의 과정이 까다롭고 차기공사 참여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심리적 이유에서 한국산 사용기피 ○ 이러한 寬行과 관련하여 뚜렷한 근거규정이 없고, 외국기업과 거래하고 있는 일본기업으로부터 수집한 사례로 문제제기할 경우 동 업체가 선의의 피해를 입게되고 거래관계에도 영향을 미쳐 구체적인 사례도 제시할 수 없는 형편임.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계도상 일본산 Cement 부기조항 폐지 ○ JIS허가를 취득한 제품은 원산지에 제한없이 사용토록 行政지도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AGOYA

발송번호	9125-0118	발송일자	1994.08.1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부산-토마코마이간의 정기선부재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년 6월 부산상선이 도산함으로써 부산-토마코마이간의 정기선이 없는 상태임. - 토마코마이(태평양에 면한 북해도의 대표적인 국제무역항구)는 신치토세공항과 인접하고 있어 북해도 진출에 유리한 입지에 있는 항구임 - 부산상선은 도산전 동 항로를 연간 120-140회(1회물동량은 20FT 컨테이너 100-120개 적재)운항하였음.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선 개설요망 - 독점시 화물요금이 높게 책정되거나 스케줄이 지켜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능항한 2개이상의 정기선사(한.일 각 1개사) 참여 희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SENDAI

발송번호	9120-0116	발송일자	1994.08.1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유화업체의 독과점 관행	()	
의견	<p>○ 일본 유화업체의 공동판매회사를 설립, 운영하고 있음. 현재 총공급량의 90%이상을 점유하고 있고 이중 80%를 종합상사에 재판매하고 있음.</p> <p>- 따라서 상기 공동판매회사는 일종의 카르텔로 메이커-공판회사-종합상사-수요자의 관계로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 수입업자는 유통구조에서 배제되어 있고 수요자가 외국산 사용시 공판회사로부터 제품배정에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외국산 사용을 꺼리고 있음.</p> <p>* 사례</p> <p>- 유화업체의 공동판매회사는 폴리올레핀(POLYOLEFIN)계 (폴리에틸렌 및 폴리프로필렌이 대표적임)의 경우 다이아플리마, S폴리마, 유니온 폴리마, 미츠비시닛키폴리마 등 4개사의 협동판매회사가 업계의 카르텔 역할을 하고 있음.</p>		
건의사항	○ 수입제품 수요자의 자율적 구매에 따른 공판회사에 의한 불이익이 없도록 일본정부의 지속적인 行政지도 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AGOYA

발송번호	9120-0109	발송일자	1994.08.1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식품통관 검사 지연 ()		
의견	○ 일반적으로 식품통관시 검사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검사방법에 있어서도 정기적 검사 혹은 샘플검사를 하지 않고 매건 施行함으로써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됨		
건의사항	○ 식품검사 기간 短縮 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AGOYA

발송번호	9116-0117	발송일자	1994.08.1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주류 소매허가 제한 ()		
의견	○ 주류 판매업은 주세법 제9조 1항에 의거 세무서의 허가제에 의해 운영하고 있음. - 소매허가의 경우 판매장 유무 등 확인절차가 까다롭고 외국인은 사실상 허가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음. - 이 때문에 한국산 주류는 판촉을 기대하기 어려운 일본 소매상을 통해서만 유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건의사항	○ 수입,도매허가가 있는 경우 소매허가 허용 및 한국업체의 한국 주류소매 취급 허용		
관련법규	일본 주세법 제9조 1항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TOKYO

발송번호	9116-0113	발송일자	1994.08.1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마른김에 대한 수입쿼터제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른김은 수입쿼터제를 실시하고 있음.(수입무역관리령 9조) - 일본 김수입조합을 통해서만 마른김 수입이 가능하며 매년 250만속의 쿼터가 배정되고 있으나 1977년 이후 16년간 일본의 수입실적이 없음 		
건의사항	○ 수입쿼터제 철폐와 맛김(25%) 및 마른김(1.5엔/장)에 대한 관세 인하 요망		
관련법규	일본 수입무역 관리령 제9조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TOKYO

발송번호	9111-0122	발송일자	1994.08.31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단무지 수입제한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단무지는 일본처럼 쌀겨나 기울(밀이나 귀리의 속껍질)에 담아 제조하지 않는다는 제조공법상의 이유를 들어 단무지로 인정하지 않고 통관을 불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측은 단무지(다꾸안 즈께)에 대한 정의를 생무우 또는 마른 무우를 절인후 조미료, 향신료, 식소 등을 넣은 쌀겨나 기울에 담근것에 한정시키고 있음(식품 위생법 제 17조) - 한국산은 보다 선진화된 제조법으로 쌀겨나 기울을 사용하지 않으면서 일본 단무지와 똑같이 합성보존료로 설펜산 칼륨을 사용하는 바 일본 세관측은 한국산을 단무지가 아닌 소금절이로 규정 짓고 소금절이는 설펜산 칼륨을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통관을 불허한다고 하였음. ○ 이로인해 오사카 국박(94. 4.26-5.1) 참가업체인 경북지방의 D사는 샘플의 통관이 불허되어 대일 시장개척을 원활히 遂行할 수 없었으며 앞으로도 동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유망한 일본시장에 진출하기가 어렵게 됨. 		
건의사항	관련규정인 식품위생법 제17조 개정 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OSAKA

발송번호	9104-0110	발송일자	1994.08.1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야채, 과일등 식품류에 대한 과도한 검사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야채, 과일, 화훼류의 경우, 수출국 공적기관 검사여부와 관계없이 다시 혼증하는 예가 많아 상품의 선도가 떨어짐은 물론 수수료 부담이 발생함. ○ 또한 가공식품의 경우, 식품첨가물 사용을 근거로 일본시험검사기관의 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는데 이경우 수수료가 5만엔이상, 시간이 2-3일 이상 소요됨 <p>< 사례 ></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년 2월 한국에서 김치 4종류를 수입통관한 바이어(수출상 D식품, 바이어 K상사)는 신청후 3일만에 검사가 종료되었고 수수료도 10만엔이 소요되었음. . '92년 12월 검사후 이상이 없다는 증명서 발부, 통관 . '93년 6월 동일상품을 통관시 재차 검사증명을 요구, 검사통관 . '94. 1월 통관시도 검사요구 		
건의사항	○ 수출국의 공적검사기관의 증명서가 있는 경우, 혼증처리 및 검사를 제외시켜줄 것을 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FUKUOKA

발송번호	9701-0021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카타로그, 캘린다 등에 대한 관세부과 (금성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샘플 통관비 과다, 카탈로그, 캘린다 등에의 관세 부담등으로 정상적 COMMERCIAL업무에 장애 발생. ○ 향후 상업용 N.C.V (NON COM. VALUE)샘플등의 경우 무관세 적용 필요. 		
건의사항	○ 요르단 주재 대사관 및 각상사 연합으로 요르단 정부에 시정 요청.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AMMAN

발송번호	9610-0040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선적전 검사 및 과실 송금상의 애로 (대우, 현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물품 선적전 검사(SGS)의 철저한 요구에 따른 수출선적 기간과다(각종 서류준비 관계) ○ 도로사정의 불량으로 내륙운송기간(뭄바사-나이로비)과다 소요 ○ 법적으로는 과실송금이 인정되고 있으나 상황에 따라 케냐정부의 일방적인 잦은 정책변동으로 불안 ○ 현지인들의 영국식, 유럽식 상관습인 D/A거래 조건요구 ○ 항만시설 부족 및 노후로 수입물품의 하역 및 통관 지연 		
건의사항	○ D/A거래를 위한 적극적인 수출보험 지원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AIROBI

발송번호	9610-0039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무역거래 방식의 제한 (선경 지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 바이어들의 D/A 거래 요구에 따른 수출물량 확대곤란 ○ 신용조사 의뢰에 대한 결과(2개월)과다 소요에 따른 수출지연 - 수출입 銀行을 통한 현지업체 신용조사 		
건의사항	○ D/A수출보험 적극지원 및 현지업체 신용 조사기간 短縮 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AIROBI

발송번호	9610-0038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한국계 은행 미진출 (KENKO TOURS LTD)		
의견	○ 현지 금융 이용시 아국업체들은 법적인 관습등으로 많은 불편이 수반됨.		
건의사항	○ 한국銀行의 지점 또는 사무소 대캐냐 진출로 아국업체들의 대 아프리카 진출 교두보 構築지원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AIROBI

발송번호	9610-0037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관세 환급기간의 장기화 (SANA INDUSTRIES CO)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원자재 통관시 부과한 세금을 수출후 환급 시일과다 (6개월에서 1년이상 소요) ○ 가발원사의 경우 주재국 SITC미분류에 따른 고율의 관세 적용 - 동부 아프리카에서는 최초 생산업체 		
건의사항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AIROBI

발송번호	9108-0121	발송일자	1994.08.24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수입허가제 (HAXIM ELECTRONICS)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기사는 전자레인지용 스위치를 생산하는 현지투자제조업체('91. 1.10)일 허가, 100% 투자)로서 부품원료로 사용되는 플라스틱 레진을 한국으로부터 수입하여 제조활동을 하고 있음. ○ 말레이시아는 지난 94년 4월7일부터 자국산 폴리에틸렌(PE)과 폴리프로필렌(PP)등 플라스틱레진 제조업체를 보호하기 위하여 동 제품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으로 사전 수입허가제를 도입하였음. ○ 이에 따라 수입상은 국내 제조업체로부터 자국내 생산이 없거나 부족해서 수입이 필요하다는 일종의 동의서 "NO OBJECTION LETTER (NOL)"를 발급하고, 이를 바탕으로 상공부로부터 수입승인(APPROVED PERMIT ; AP)을 받아야 수입이 가능함. ○ 이후 상당량의 원료제품들이 NOL을 받는데 지연됨으로 인해 항구에서 적체현상을 빚기도 하고, AP를 받기 위해 수도인 쿠알라룸푸르까지 지방소재 수입상들이 출장을 하는 불편을 야기하기도 하였으나 수입상 및 최종수요자의 불평으로 지난 5월5일부터는 지방에서 AP를 발급토록 하였음.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계적인 유화제품 공급과잉 등으로 저가수입품 유입에 따른 자국 제조업체 보호를 위해 취해진 조치로 평가되고 있으나, 말레이시아 내에 동원료를 공급할 수 있는 업체는 1개사로서 현지 수요를 충분히 Cover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일시적인 원료부족 또는 수입시 부대비용 및 불필요한 시간소요를 초래하고 있는 만큼 NOL 및 AP 제도 폐지 요청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KULALUMPUR

발송번호	9410-0019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관세산정 방식 변경에 따른 예로 (대우전자)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3년말까지는 수입관세 산정을 FOB가격 기준으로 하였으나 94년부터는 C&F기준으로 변경처리함에 따라 지리적으로 멀어 운임이 과다하게 소요되는 한국의 수출에는 수입관세가 높아져 경쟁력이 저하되고 있음. ○ 특히 93년부터 한국의 수출이 크게 증가하기 시작한 냉장고, 세탁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고운임이 소요되는데 이와같은 수입관세 산정방법의 변경으로 수출에 타격이 큼.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규범이나 한국과의 쌍무적 차원에서 멕시코의 수입관세 적용방법에 문제점이 있으며 이에대한 시정이 가능한 협상 또는 대책 마련이 요구됨.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MEXICO

발송번호	9705-0082	발송일자	1994.07.15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수출 보험제도의 활용 제한 (경희어망)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어망의 경우 연근해업을 위주로하고 있는 남미와 아프리카 대륙이 주요수출지역이며 이들지역에서의 안정적인 수요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함. ○ 이들국가들에 대한 수출시 현지바이어들의 요청과 이들 지역국가들의 외환사용 어려움을 감안, 거래경험이 있고 신용이 있는것으로 판단되는 바이어들에 한하여 계속적인 거래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신용장방식이 아닌 D/A방식의 거래를 하는경우가 다반수임. ○ 이러한 경우 거래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수출보험으로 대처코자 하나 해당국가 바이어들이 재무재표를 공개하지않는 경우가 빈발하여 신용조사시 수출보험으로 부보할수없는 등급(예:G등급)으로 판정이 내려져 이들 바이어들과의 거래시 수출보험으로 부보 할수 없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음. ○ 이로인해 포괄수출보험에 가입한 중소기업체들도 수출보험의 혜택을 상실하게되는 경우가 발생하게됨.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現行수출보험의 신용조사시 단지 銀行간의 신용조사 방법만으로는 현지 바이어의 정확한 재력이나 신용상태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므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1)실제 바이어의 신용상태와 재력등을 정확히 파악 할 수 있도록 모로코정부나 모로코에 있는 한국공관 등 공공기관의 국가기간 요원들의 현지 신용조사를 활성화하고 이를 수출보험제도에 적용하는 방안의 마련이 요청되며 2)전반적으로 중소 제조업체들의 신시장 특히 아프리카,중남미등 오지 대한 수출시 수출보험을 現行보다 확대 적용하는 제도 마련이 요청됨.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CASABLANCA

발송번호	9705-0006	발송일자	1964.06.28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수입허가제	(아시아통상)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로코 정부는 대외적으로 수입을 100% 개방하는 정책을 취하고 있으나 실제로 일부 품목들에 대하여 수입허가를 의무화 하고 있어 사실상 수입통제 조치를 并行하고 있음. ○ 한국상품들중 모로코 시장에 충분한 경쟁력을 가진 상당수 품목들이 수입허가 품목으로 분류되어 수입허가를 취득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예:운동화, 여성의류 등) 		
건의사항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CASABLANCA

발송번호	9705-0005	발송일자	1994.06.28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빈번한 통관지연	(가일통상)	
의견	<p>○ 모로코의 통관은 수입시 수입물건 도착후 수출 물량 확인 및 통관까지 28가지의 복잡한 절차를 밟아야 하며 반면 수출품의 통관은 수출물품과 관련서류(관세유보서류 등)를 세관에 접수한후 1일만에 통관이 이루어지는등 수출은 장려하고 수입은 억제하는 모로코 정부의 입장을 반영하고 있음.</p> <p>○ 따라서 이러한 통관관례에 비추어 모로코에 투자하여 생산된 물품을 수출하는데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으나 수출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수입할 때에는 통관지연 사례가 빈번함.</p> <p>○ 특히 봉제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시</p> <p>1)원단이나 수량으로 환산하여야 부자재도 모두 증량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증량을 산정하는 과정에서의 시간이 오래걸리고 또한 원부자재의 경우 선적시점과 통관시점 사이에 자연손실분 등으로 인한 사소한 수량 차이를 이유로 통관지연 사례가 빈번함.</p> <p>2)통관절차가 복잡해 시간이 오래 걸리고(평균10-15일) 토.일요일이 휴무임에 따라 통관의 연속성이 없는 상황임.</p> <p>○ 또한 이러한 통관상의 지연사례로 수입시 전체금액의 3%, 수출시 전체비용의 2% 정도가 통관비용으로 소요됨.</p> <p>- 수입물건 도착후 WT(증량) CHECK →통관(28가지 절차 필요)</p> <p>. 원단이나 수량으로 환산하는 부자재를 모두 WT로 산정하기 때문에 WT차이로 인해 통관의 지체가 빈번함.</p> <p>. 통관절차가 복잡해 장시간 소요(평균 10-15일)</p> <p>통관비용(수입금액의 3%, 수출금액의 2%)</p> <p>- 수출물건과 관세유보서류 접수후 1일만에 수출통관</p>		
건의사항	<p>○ 부자재에 대한 LOSS인정 (원자재에 대해서는 10% 인정)</p> <p>○ 통관절차의 간소화, 즉 수출업체의 수입품에 대해서는 공장자체를 보세구역화 하는 등의 방법이나 수입품의 공장에서의 통관 등이 있을 수 있음.</p>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CASABLANCA

발송번호	9705-0004	발송일자	1994.06.28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외국 투자업체에 대한 지급 보증 제한 (가일 통상)		
의견	<p>○ 모로코는 수출업체에 대하여 수출용 원자재의 수입시 銀行보증과 업체간 상호 담보의 방법으로 관세를 유예해 주고 있으나 외국 투자 업체는 다른 업체와 신용이 없기 때문에 업체간 상호 담보의 방법을 사용할 수 없고 銀行담보를 이용하여 관세를 유예 받아야 되는 데 이경우에도 외국 투자업체는 현지의 현실적 기반이 脆弱함으로 銀行 보증을 위한 담보제공에 무리가 따름.</p> <p>- 수출용 원자재에 대한 BANK CAUTION은 그에 상응하는 물적담보가 있어야만 銀行에서 해주므로 현실적 기반이 없는 투자업체는 담보제공에 문제가 있으며 단지 지급보증 기능만 하는데 있어 (원자재 담보가 되지 않음) 무리한 담보제공이 있어야 함.</p> <p>- 이외 2개의 회사가 서로 보증하여 담보하는 방법 등이 있으나 외국업체는 BANK CAUTION이외에는 사용이 어려움 (사유: 서로가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없음)</p> <p>* BANK CAUTION:銀行이 관세에 대해 담보</p>		
건의사항	<p>○ 100% 수출만 하는 업체의 경우 원자재를 담보로 하든지 BANK CAUTION 대신 세관자체에서 그 수출업체를 인정하여 신용으로 관세를 유보해주는 방안이 필요함.</p>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CASABLANCA

발송번호	9112-0001	발송일자	1994.06.28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수출입 L/C 결제상의 문제점 (I.C ENTERPRISE)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의 국가 신용도가 떨어져 한국의 모든 銀行과 CORRESPOND가 되지 않고 있어 수출입 L/C 결제에 문제점이 많음. ○ M.F.T.B는 한국의 외환銀行과 CORRESPONDENCE가 되고 제일, 상업, 대구, 신탁銀行은 ACCEPTABLE BANK로 ○ M.I.C.B는 외환, 대구銀行으로 한정되어 있어 L/C를 개설하는데 애로사항이 많으며, 시간이 지연되고 있음. ○ 상기 미얀마銀行 모두 NEW YORK CITY BANK 구좌를 가지고 결제하고 있으며 L/C결제의 경우 한국측 대금결제후에도 2주-2달이 소요되어 문제가 되고 있음.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미얀마 정부는 민간업자들이 수출입을 하기 위해서는 미얀마 정부銀行 MFTB 및 MICB에 외화가 반드시 입금되어야 하는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의 모든 銀行과 CORRESPOND가 되더라도 향후 미얀마측의 L/C로 인한 문제발생 소지가 전무하므로 대 미얀마 무역거래의 원활화를 위해서 한국의 모든 銀行이 미얀마 銀行과 CORRESPOND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함.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YANGON

발송번호	9112-0003	발송일자	1994.06.28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취약한 투자환경	(대우합판)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미얀마는 국민소득 200\$ 내외의 세계 최후진국으로 사회간접자본 시설이 열악한 실정으로 물류비용과다와 시간낭비가 큼. ○ 契約移行, 준수, 전신, 태도회박:정부기관이 맺은 契約사항 조차 준수되지 않아도 상관없다는 의식이 보편화되어 있음. ○ 무역거래 인허가시 단계의복잡 및 음성적지출과다, 소요시간과다 - 수입허가, 통관시 100%인허가 획득사항이고, 매단계별 비정상적 비용지급이 관례화(심지어 부두내 경비원에게도 CARGO PASS비용 지급 등)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미얀마는 비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경제제재 조치로 인하여 외화부족으로 경제개발의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으며 상기와 같은 시기에 가능하면 정부차원에서 대미얀마 경제원조를 증가시키는 것이 향후 한국의 대미얀마 진출에 유리한영향을미칠것으로판단됨. ○ 경제조치 이전 대미얀마 최대 원조국은 일본으로 산업시설, 항만, 교통시설등의 원조를 통한 자국상품 수출로 기존 미얀마 시장을 일본이 독점한 점을감안 현재 선진국의 경제원조를 통한 미얀마 진출이 중단된 시점에 한국이 경제원조를 증가 시킨다면 차후 그 이상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관련법규			
유첨	대우합판(신태철 이사)에로신고서 1부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YANGON

발송번호	9112-0002	발송일자	1994.06.28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투자계획 수립시 기초 통계자료 입수곤란 (진로인터내셔널)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중국, 베트남 이후 가장 유망한 투자 적격지로 평가받고 있는 미얀마를 많은 한국업체들이 방문 투자타당성 조사를 하고 있으나 미얀마 각종 통계수준의 열악 및 정부관료의 사회주의 타당성으로 인한 기존 통계조차도 대외비로 취급 공개를 하고 있지 않음. ○ 동 문제점은 일반업체는 물론 현지에서 한국공관 소속 상무관실로 활동하고 있는 양곤무역관도 마찬가지여서 각종 보고서 작성시 필요한 통계를 입수하는데에 어려움이 많음. ○ 현재까지 양곤무역관에서는 강기 통계의 원활한 입수를 위하여 경제기획부 산하 중앙통계국에 수차례 서한을 송부하고 경제기획부장관에게까지 협조공문을 발송하였으나 지금까지 개선되지 않고 있는실정임.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얀마 정부관료의 사회주의 타성은 계속 군부통치가 지속되는한 변하지 않을것으로 판단되나, 기존 보유통계의 원활한 입수를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교섭노력 전개 필요 ○ 경제관련 고위인사를 미얀마에 파견, 협상시 양국간 필요 통계자료의 원활한 교류를 요청하는 것도 한 방법인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YANGON

발송번호	9501-0098	발송일자	1994.08.17
수신처	지역조사부장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지속적 GSP 공여 ((주)대우암스텔담지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 執行委는 지난 6월 향후 10년간 적용될 신 GSP제도의 기본운용 방안을 발표하고, 동안을 기초로 회원국들의 의견을 수렴, '95년부터 施行할 예정으로 있음. ○ 동안은 "국가별 일괄졸업"이 아닌 "품목별 차등 GSP 공여"를 골격으로 하고 있는 바, 향후 역내 회원국간의 품목선정을 위한 의견 수렴과정에서 역내 생산업자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 민간품목 뿐 아니라 일부 비민감품목들 (대우의 경제 세계원료인 LAB)도 GSP 공여대상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있음. ○ 대우가 EU로 수출하고 있는 LAB는 그간 비민감품목으로 분류, 퀴타 (연간 1,389,000ECU)내에서 뿐 아니라 동 퀴타를 초과하더라도 GSP 공여세율(0%)을 적용받아 왔으나, '93년중에는 스페인과 이태리의 관련업체들의 반발로 퀴타 초과물량에 대해 6.3%의 관세를 지불한 바 있으며, 금번 GSP 운용개선 논의를 계기로 동 품목을 GSP 공여 대상에서 제외하기 위한 로비가 펼쳐지고 있는것으로 알려짐. ○ 한국산 LAB의 현지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GSP의 지속 수혜가 필수적인 바,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관심과 지원이 요망됨. 		
건의사항	EU 회원국의 의견수렴과정에서 자국의 이익만을 고려, 기존 비민감 품목이 GSP 공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EU 執行委에 요청필요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AMSTERDAM

발송번호	9107-0010	발송일자	1994.06.28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기업활동 기반 취약	(범양상선)	
의견	<p>○ '94년 1월이후 주재원들이 주택 무장강도 침입, 자동차 강탈, 현금강탈등을 당하는 등 치안이 매우 불안정한 상태임. 이는 파키스탄에 대한 한국기업들의 진출을 크게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음.</p> <p>○ 또한 많은 한국기업이 소재하고 있는 카라치에는 子女교육을 의뢰할 수있는 일정수준 이상의 교육 시설이 KARACHI AMERICAN SCHOOL한 곳뿐인데 최근 많은 주재원들이 子女의 입학허가를 취득하기 위해 반년 내지 1년 이상을 대기하는 상태이며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지 모르는 난감한 상태임</p>		
건의사항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KARACHI

발송번호	9528-0078	발송일자	1994.07.04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은행간 코레스 계약 체결 미흡 (천승실업)		
의견	○ 한국銀行과 현지 銀行간 CORRES관계의 미흡으로 무역거래시 대금송금, 수령시 예외사항 발생		
건의사항	○ 한국 銀行들의 폴란드 銀行과의 CORRES 契約 확대 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WARSAW

발송번호	9528-0077	발송일자	1994.07.04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승용차 차별관세 적용 (현대종합상, 삼성전자)		
의견	○ 차별관세 - 서유럽산 자동차의 경우 무관세 QUOTA에 의해 통관되나 한국산은 35% 관세 추가 납부로 경제력 상실		
	○ 포괄보험 이용 불가능으로 인한 적극적 판매정책 방향상실		
건의사항	○ 관세에 대한 정책적 LOBBY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WARSAW

발송번호	9528-0008	발송일자	1994.07.04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세관의 자의적 상품분류 적용 (P.Y CORPORATION)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관시 세관에 따라 적용하는 세번 및 세율이 다르고 심지어는 같은 세관에서도 담당자에 따라 세번 세율이 상이함. ○ 한국에서 제품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파손되어 보험부보회사인 보험회사에 조사를 부탁할 경우 적절한 검사를 하지않고 무조건 수출자의 잘못으로 판정을 하고 낮은 보상율을 적용하며 보험금을 지급하는데도 約 6개월이 걸려 실제 보험혜택을 실질적으로 받지못하는 경우가 발생되고 있음.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보험회사가 폴란드 파트너를 선정할시 보다 세밀히 검토를 하여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 적절한 보험금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WARSAW

발송번호	9526-0051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현지 노동, 세무, 금융관행에 따른 애로 (GARDENA LTD)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USSIA 국내법에 대한 사전지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투자자(혹은 관리자)와 현지인 STAFF간의 업무의 이해 및 進行에 많은 문제점이 있었음 ○ 특히 현지인의 노동법 및 세무관련 銀行업무 등은 타국의 일반적인 국제관례와 상이한 점이 많은 것 같음 ○ 특히 수출입에 관련한 통관업무는 애로점이 많으며 선적전후의 INFORMATION에 대한것도 애로사항의 하나임. 이점은 선박관련 회사 담당자들의 SERVICE개념의 부족인것으로 판단됨.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 투자자에 대한 일정기간 동안의 RUSSIA 국내법에 대한 면책권을 제정 관리토록 하였으면 좋을 것으로 판단됨(특히 국내법중 특별히 타국과 상이한 법) ○ RUSSIA 노동법, 세무 등에 대한 영문, KOTRA 자료집 발간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MOSCOW

발송번호	9526-0052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과도한 조세부담	(COMOROS)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 VAT20% 신규의 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관상의 투자인 경우에도 동세금을 납부해야 하는것은 부당한 것으로 판단됨 ○ 특별소비세 3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물품판매시 35%의 특소세(가죽의류의 경우)를 납부해야 하므로 현지 LOCAL판매가 이때문에 불가능함 		
건의사항	○ 상기 세제 및 특별소비세의 경감이 요구됨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MOSCOW

발송번호	9526-0053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수송 및 금융상의 애로 (삼안트레이딩)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금융: 한국측 銀行에서 러시아 L/C를 인수하지 않는경우가 많아 수출에 애로점이 되고 있음 ○ 수송편: 지역 특성상 컨테이너로 수송하여하 하므로 컨테이너 선사가 1개사로 비경쟁 상태이므로 운임이 기타인근 지역에 비해 지나치게 고가임.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내 銀行과 현지銀行간 거래협정 체결 필요 ○ 컨테이너 선사를 추가투입하여 경쟁을 유발 운임을 적당한 수준으로 안정시키고 선량을 늘여 운송편의 도모필요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MOSCOW

발송번호	9526-0054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운송수단 부족 (LIFE LINE CO)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박문제: 부산과 VOSTOCHNY를 왕복하는 컨테이너 선박운송회사는 한.러합작회사인 FESCO(동해해운)로 회사 독점라인임. 이로인해 러시아와 무역을 하는 업체의 손실이 큼 ○ 한.러 교역이 점점 증가하면 컨테이너 적체현상은 심각해질 것이며 거래관계를 맺은후 주문물량 선적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 ○ 선적지연에 따라 수입상들이 요구하는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발생되고 있음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러 합작회사인 FESCO독점 LINE을 철회하고 2-3개 이상의 운송회사가 더추가 되도록 정부차원에서의 노력이 필요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MOSCOW

발송번호	9708-0036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투자 승인 지연 및 외국인 지분 제한 (정립지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의 제반 협정 절차가 까다롭고 규제가 많아 합작투자 사업 승인에 장기간(2-3년)소요로 합작사업 추진에 애로가 많음. ○ 외국인 합작투자 비율 제한(49%)으로 외국인에 의한 효율적인 경영체제가 미비되어 있으며 투자보장 협정 등 미비로 합작투자 보호 장치가 미흡함.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의 합작투자법 및 行政절차 개선 요망 ○ 투자보장 협정체결 추진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JEDDAH

발송번호	9708-0031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세관 통관상의 애로 ((주)금호 지사장)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는 세관통관 절차가 매우 까다롭고 수입화물을 매우 거칠게 다루어 때때로 아국 업체가 많은 불편과 피해를 보고 있음. ○ 샘플을 지사 명의로 발송하면 통관이 안된다는 등 스폰서 제도 때문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고 있음.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관통관 절차 간소화를 양국 통상관계회의 또는 대사우디 정부 접촉을 통해 협조 요청.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JEDDAH

발송번호	9708-0030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지사, 사무소 설치 제한 (삼성물산, 금성사 등)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에 지사, 사무소를 두고있는 외국업체들은 실질적으로 지사 등록을 할 수없고 사우디 스폰서의 직원 신분으로 활동하고 있음. ○ 따라서 클레임 등 상사분쟁이 발생할 경우 효과적인 대처가 어렵고 사실상 사우디 국내법에 반하는 불법영업이기 때문에 문제의 소지를 안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JOINT VENTURE COMPANY를 제외하고 외국상사가 사우디 내에 지사를 설치할 경우 C.R(COMMERCIAL REGISTRATION)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SPONSOR/AGENT를 통한 영업만이 가능. - 또한 클레임이 발생할 경우 사실상 불법영업을 하고있는 종합상사들은 정당한 클레임 해결이 되고있지 않아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경우가 많음 (SPONCER가 강할경우는 예외임)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외국업체 지사를 인정치 않고 있는 사우디 현 국내법상 지사의 정식 등록 조치는 불가능함. 현재 GATT가입을 신청해 놓고 있는 사우디가 GATT가입국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스폰서 제도를 완화 또는 폐지토록 권유해 나가야 할 것임. ○ 어려운 제도적인 문제이나 C.R을 발급받아 합법적인 영업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함. 		
관련법규	KUWAIT COMMERCIAL LAW ARTICLE NO 23, 24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JEDDAH

발송번호	9708-0029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여행 증명서 발급에 따른 여행 제한 (한국타이어)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우디 거주 외국인이 거주하고 있는 도시를 벗어나 여타 지역을 旅行할 경우 旅行증명서를 반드시 소지하게 되어있어 이로인한 한국주재 상사들의 경우 사우디 지방도시를 수시로 심방하여 세일즈 하는데 큰 불편을 겪고 있음.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실적으로 사우디가 施行하고 있는 旅行증명서 발급제도는 폐지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됨. 대신 발급절차를 더욱 간소화 하고 유효기간을 연장해 주는 방안을 적극 요청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JEDDAH

발송번호	9708-0028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VISA 발급상의 애로 (효성물산)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두바이 등 사우디 인근 국가에 주재하고 있는 아국업체 지사원들이 세일즈 활동차 사우디를 방문하고자 할 때 현지 사우디 대사관에서는 VISA발급을 해주지 않고 있음. ○ 따라서 비자 발급을 받기 위해서는 여권을 서울로 송부 주한 사우디 대사관에서 발급 받아야 하며 VISA 또는 단수 VISA로 불편이 많음. ○ 또한 현지 주재원은 사우디 입국후 Working Visa 및 IQMA(일종의 거주 증명서)를 발급 받아야 가족 초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불편이 큼. (통상 2개월 가량은 가족없이 지내야 함)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 애로사항은 과거부터 제기되어온 사우디 및 인근국 주재상사 지사원들의 민원 사항인 바 사우디 정부에 동건시정을 강력히 요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 특히 사우디 외무성에서 보다는 해당국 사우디 대사관의 비협조가 더 큰 문제인 것으로 보임.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JEDDAH

발송번호	9115-0044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이중과세 및 VISA 취득 (한국코트렐 지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만에서 발급되는 비자는 2주일 VISA인 이유로 PLANT위주의 수출업체는 1,2개월이상의 VISA가 필요함으로 출장시 많은 애로사항을 수반함. 아울러 비자발급에 소요되는 일수도 5-7일로 긴편임. ○ 2중과세 방지협정이 체결되어 있지않아 세무감사시 상당한 애로사항을 가져옴(예:한국에 납부된 세금은 대만정부에서는 인정하지 않음) 		
건의사항	○ 2중과세 방지협정 체결 및 VISA 기간 연장 요망		
관련법규	대만 외교부 비자발급 규정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TAIPEI

발송번호	9510-0070	발송일자	1994.06.30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과도한 상거래 정보요구 (삼성전자 사무소)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제품 이스탄불 현지 판매시 회로도 포함 -TSE규정에 의거 전자제품 판매시 제품의 회로도를 SET와 같이 포장하게 되어있음. 이는 공급자측에서는 기술정보의 누출과도 같은 사항임. 		
건의사항	○ 소비자의 경우 동회로의 분석 및 사용이 불가하므로 터어키 TSE규정의 동 조항 삭제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ISTANBUL

발송번호	9510-0069	발송일자	1994.06.30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통관절차 지연 (삼성전자 사무소)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견본 통관대 및 통관소요기간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거래선용 견본 및 사무소 전시용 견본 통관시 소요 비용 과다 - 견본 송부후 통관에 소요되는 시간이 평균 10-15일 소요됨에 따라 거래추진상의 애로 		
건의사항	○ 일반제품 공급과 달리 견본류 통관의 경우 터어키의 통관절차 간소화 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ISTANBUL

발송번호	9510-0068	발송일자	1994.06.30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운송수단 취약	(SEOUL TRADING LTD)	
의견	<p>○ 운송수단 개선 필요</p> <p>- 이스탄불 수출시 운송수단은 C.G.M과 NEDLIUD LINE이 있으나 29-35일 이상이 소요되는 항해 일수와 이스탄불 항구 자체의 화물처리까지 감안하면 실제 CARGO는 선적후 40-50일 이후 수입상에게 전달됨.</p> <p>- 이스탄불 자체만으로도 최근 FASHION변화가 특히 COLOR및 나염의 경우 DESIGN의 기호가 상당히 빠르게 변화(進行)되고 있고 유럽 봉제업자들의 오더수주로 부터 봉제후 유럽으로 선적까지 進行中 상기 항해일이 차지하는 부분은 상당히 큼.</p>		
건의사항	<p>○ 이스탄불 직항로 개설 요망</p> <p>- 자중해연안 및 흑해연안 동구 소련까지 파급효과 기대</p>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ISTANBUL

발송번호	9510-0067	발송일자	1994.06.30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불안정한 현지 금융체제 (터어키 한인회)		
의견	<p>○ 지속적인 터어키 경제의 불안정과 터키계 銀行의 규모상의 영세성 (개별 銀行이 지급불능의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 그대로 銀行파산이며 정부로부터의 지급보증등의 법적 보상이 전혀없음. 즉 銀行의 설립 운영이 완전히 개방되어 있는 소자본 주식회사의 성격임), 국제간의 대금결제지연 및 불안정 등의 사정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교민상사들이 불안한 상황에서 銀行거래를 하고 있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터어키수출의 경우 터어키 수입업체와 신용장 개설 銀行 간의 해당건에 관한 담보설정 상황등을 알 수 없을 뿐만아니라 지급 銀行인 신용장 개설 銀行의 자체적인 상황에 따라 (銀行파산이 아닌 경우라 할지라도) 대금결제를 미룰 수 있는 가능성이 상존함. - 결국 한국의 수출업체가 그만큼의 지연이 자부담을 지게됨. - 수입업체가 부도날경우 해당 銀行이 해당신용장 금액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떠맡는 자세가 아님. - 대터어키수입의 경우 비정상적인 선적서류 점검 등을 할 수 있는 장치가 전혀없음 - 터어키 단순송금의 경우 실제로는 해당금액이 지급 銀行인 터키 銀行에 도착은 되어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입금되지 않았다고 하면서 동금액을 수취인에게 적기에 지급해주지 않는 경우가 있어 많은 불편을 겪는 수가 있음. 또는 송금절차상 다른 중간 銀行이 개입되는 경우가 허다한바 이때는 본의 아닌 장기간 입금지연이 발생함 - 진출업체의 본사 또는 3국으로 단순 송금시 송금 銀行의 사정에 따라 실제송금이 지연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또한 다른 중간 銀行이 개입될 때에도 본의아닌 장기간 입금지연이 발생 		
건의사항	○ 한국계 銀行이 터어키에 설립 운영 되는 경우에는 금융부분에서의 많은 부분이 개선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터어키를 중심으로한 주변국가와의 무역거래 확대에도 혁신적인 기여를 할수있음.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ISTANBUL

발송번호	9510-0066	발송일자	1994.06.30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현지 환경을 고려한 진출전략 수립 (KIK LTD STI)		
의견	<p>○ 섬유기계 및 부속관련: 터키의 주요산업 중 전기, 전자는 주로 대기업 중심의 거래로 정보가 비교적 체계적인 반면 섬유분야는 중소기업 위주의 자료 및 정보 취득이 곤란.</p> <p>○ 따라서 섬유시장을 좀더 세분화할 필요가 있으며 분야별로 특성을 고려, 대기업 적합 ITEM과 중소기업형 ITEM을 구분하여 상호협조를 통한 공조체제를 갖추어야 함 (일본상사들이 한국업체의 제품을 OFFER하는 경우도 있음)</p>		
건의사항	<p>○ 터키 섬유산업 규모, 구조 특성상 한국산 제품이 적합한 부분이 많음을 인지하여 분야별로 세분화하고 진출유망 ITEM을 선정, 한국제조업체와의 유기적 연결이 요구됨.</p> <p>○ 섬유기계 및 부품류의 진출 가능성은 많으나 좀더 구체적인 시장조사 및 마케팅 활동을 위한 현지인 자문위원 위촉제도가 필요함. 즉 현지유력회사 사장등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정기 및 부정기적 회합을 통하여 업계동향, 반응 및 향후 대책등을 협의하는 것이 필요함. (큰규모가 아닌 세분화된 SECTOR 및 자문회의: 3-5명)</p>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ISTANBUL

발송번호	9510-0065	발송일자	1994.06.30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불안정한 현지금융 체제	(금성사 지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터어키 경제사정의 악화에 따른 銀行들의 도산으로 위험이 따르고 있으며 한국 수출보험공사측에서는 공신력 있는 기간으로 부터 터어키 경제상황에 대한 정보 입수 부족으로 보험의 부보를 수락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보험공사에서 터어키 경제현황에 대한 자료와 보험의 부보를 판단할수 있는 자료를 입수할 수 있도록 지원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ISTANBUL

발송번호	9707-0007	발송일자	1994.06.28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과도한 원산지 증명 발급 인증료 (한국타이어)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UAE지역에 대한 수출건에 대해 UAE정부는 각국의 UAE대사관에서 반드시 원산지 증명을 받도록 하고 있음. 이는 대부분의 국가가 수출국 상공회의소 등에서 자체 원산지 증명서를 발급받아 첨부하도록 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임. ○ 특히 UAE지역에 소액 수출을 많이하고 있는 한국 중소기업에게는 인보이스 가격의 1%이상에 해당하는 인증료 납부가 커다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됨. ○ 더우기 UAE에 대한 한국의 수출액이 US\$10억을 넘어 US\$10.2억을 기록하는 등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인증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됨. (US\$10억의 인증료 1%는 US\$1천만불에 해당됨) 		
건의사항	이러한 제도는 상호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 불공정 무역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으며 정부간 해결 노력 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DUBAI

발송번호	9512-0057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VISA 발급상의 애로 (대우 영국현지 법인)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재원 가족 영국 도착시 공항 IMIGRATION 애로: 주재원 입국후 WORK PERMIT, 관련 VISA(48개월), GREEN CARD사본을 서울로 송부한후 주한영국 대사관으로 부터 가족의 영국 입국VISA를 받고 있음. ○ 그러나 공항 IMIGRATION 담당측에서는 주재원의 가족사실을 입증할수 있는 결혼증명서 제시를 요구한후 임시체류 VISA를 부여하며 즉시 경찰에 신고할 것을 요청하고 있음.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한 영국대사관에서 發行하는 ENTRY CERTIFICATE VISA가 영국 입국시 필요가 없다면 서울에서 VISA를 받을 필요가 없으므로 주한 영국대사관에 동사실의 유.무 확인을 요청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LONDON

발송번호	9512-0056	발송일자	1994.06.2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기술장벽(규격) (삼성물산 런던지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보통신기기 수출: 한국에서 영국으로 정보통신기기 수출시 영국은 자체안전 규격(BABT)승인후 판매토록 하고있는데, BABT승인에 6개월 이상이 소요되고 있음. -제품의 라이프사이클이 짧아지고 있음을 감안할때 6개월 이상의 규격인증시간 소요로 판매시기를 놓칠수 있음. 이는 소비자를 보호한다는 명목하의 비관세 장벽으로 판단됨 -미국의 FCC나 독일의 FTZ를 받은 제품에 대해서도 영국 판매시는 BABT를 추가로 받아야 함. 		
건의사항	○ 제품의 자유이동을 위해 상기와 같은 비관세 장벽이 제거되어야 하며 불가시는 국제 공통의 단일안전 규격 도입이 필요함.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LONDON

발송번호	9308-0095	발송일자	1994.08.11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조미료에 대한 고율관세 (미원 현지법인)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내 식품가공업체가 주로 사용하여 산업용수요가 많은 식품 첨가물 일종인 MSG(MONO SODIUM GLUTAMATE)와 저칼로리, 고감미료인 ASPARTAME에 대한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음. - 미국 수입관세율 MSG ; 12%, ASPARTAME : 11.9% 		
건의사항	○ MSG, ASPARTAME는 전자제품에서의 반도체와 마찬가지로 식품가공품에서는 수요가 많으므로 대미 관세 양허협상에서 주요 중점품목으로 취급 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EW YORK

발송번호	9308-0094	발송일자	1994.08.11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전략물자 수출통제(반도체)	(아남산업 지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도체 조립산업은 이미 미국의 상무부 및 국무부의 수출통제하에 있는데다 대미수출시 COCOM 규제로 인적, 시간적 손실 발생 * 아남산업의 대미 반도체 수출은 100% OEM 수출이며, 무환수탁가공 형식임. * 무환수탁가공 : 가공무역의 일종으로 원부자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거래상대자의 위탁에 의해 무환으로 수입하여 이를 가공한후 위탁자 또는 그가 지정한 자에 수출하는 형식 		
건의사항	○ 미국산 반도체 조립수출 경우 한국의 COCOM 규제 해제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EW YORK

발송번호	9308-0091	발송일자	1994.08.11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정기선 부족 및 운임과다 (동국제강, 삼성전자)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기선 부족 및 운임과다로 납기가 지연되어 비가격측면에서도 경쟁력이 弱化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미국향 철강재를 수송하는 선박이 평균 1.5개월에 한번씩 있어(과거 : 2개월에 3번) 수요자들이 요구하는 납기를 맞출수 없음. - 운임이 제품가격의 14%-17%정도를 차지할 정도로 과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운임 : \$54 - 77/MT ○ 정기선을 독과점하고 있는 한국 해운사들이 항해 도중에 발생하는 Damages에 주의를 하지 않고 이를 방지하려는 노력이 미흡하여 현지 Claim이 많아 애로사항이 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산 강관자체에 대한 평가는 좋으나, 해상운송중 하자발생율이 (녹이 슨다든지 바닷물과 접촉) 높아 외면하는 경향이 있음.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기短縮위한 해상직항로 횡수증편 및 통관절차 간소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상 Order 입수후에 자재 및 완제품에 통관 및 수송기간을 短縮하여 제품 Life Cycle이 짧아지는 추세에 대응해야 함. ○ 정기선 증편 및 한국 해운사 독과점 구조 완화 ○ 한,미간 해상직항로 횡수를 주2회에서 7회로 증편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EW YORK

발송번호	9308-0090	발송일자	1994.08.11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상호주의에 입각한 내국민대우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의회는 상호주의에 입각한 내국민대우를 조건으로 한 93년 6월 NATIONAL COOPERATIVE PRODUCTION AMENDMENT ACT를 입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합작투자에 대한 독점금지 기준을 완화하였지만, 모기업 소재국의 합작투자법이 미국기업 내국민 대우를 부여하지 않을 경우 독금법 완화조항 적용에서 제외 ○ 93년 상.하원에서 제출, 계류중인 금융서비스 공정무역법안(FAIR TRADE IN FINANCIAL SERVICE)은 미銀行에서 내국민대우를 거부하는 국가의 銀行이나 증권사가 미국내에 지점을 설치할 경우 상호주의에 입각하여 내국민대우 거부를 규정 ○ 이외에도 항공권소시움, 환경기술, 우주선발사 등에서 조건부 내국민 대우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법안 제출 		
건의사항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EW YORK

발송번호	9308-0088	발송일자	1994.08.11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배타적 운송관행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자국해운업에 각종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고, 정부관계 화물 운송을 독점케 하는 등 육성정책 실시 - 미수출입銀行(EXIM BANK) 용자대상, 모든 정부원조관련 선박화물은 50%이상을 미국적선으로 운반 의무화 - 잉여농산물은 75%이상을 미국적선으로 운반 의무화(1985년 농업법) ○ 미국정부는 JONES ACT를 계속 고집함으로써 미국내 수역간 운송 화물의 미국적선 사용 의무화(이로인해 연간 31억불 추가부담 : USITC 추정) 		
건의사항			
관련법규	Jones Act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EW YORK

발송번호	9308-0087	발송일자	1994.08.11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국가 안보를 위한 외국인 투자제한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XON-FLORIO조항은 국가안보상을 이유로 한 외국인의 대미투자를 크게 하는 것으로 88년 종합무역법에 첨가됨. - 국가안보에 대한 정확한 개념정의가 없고, 미국정부의 뚜렷한 입장이 없음. - 동 조항에 근거한 외국인 투자 심의위원회(CFIUS)의 외국인 직접 투자 심의절차가 예측성 및 투명성이 결여됨 		
건의사항	○ 미국의 대한민국 기간산업 투자자유화 압력에 대응논리로 활용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EW YORK

발송번호	9308-0086	발송일자	1994.08.11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건설시장 진입제한 (현대외 3개사)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의 건설시장은 타국에 비해 합리적이라는 장점이 있으나, 일부장벽이 존재 - 공사금액의 100% 보험에치인 SURETY BOND 보증에치의무를 FIDIC 및 국제입찰 慣行 수준으로 완화 * SURETY BOND ; 미국 건설공사의 각종보증(입찰, 履行, 지불보증)은 중동 및 동남아국가들과는 달리 銀行보증(BANK GURANTEES)이 거의 통용되지 않고, 미재무성이 인정하는 소수의 미보증 보험회사(SURETY COMPANY)에서 발급하는 보증서인 SURETY BOND제출을 요구 - BUY AMERICAN POLICY · 미정부 발주공사 소요자재는 원칙적으로 미국산 사용 의무 		
건의사항	○ SURETY BOND의 100% 보증요건 점진적 완화와 SURETY BOND심사 과정에서 제3국 공사실적 인정하도록 미정부와 협상 추진 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EW YORK

발송번호	9308-0085	발송일자	1994.08.11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사회보장세	(한국계 지상사 전부)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내 한국지상사원들은 국내적으로 국민연금법에 의해 연금을 납부하고 있으며, 미국에서도 FICA법(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에 의해 사회보장세(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고 있으나, 이들중 상당수가 단기체류자여서 미국으로부터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없음. 		
건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94. 8월 현재 17개국이 미국과 사회보장세 조세협정을 이미 체결한 상태이고, 11개국이 협상이 완료되어 의회승인을 기다리고 있거나 협상 進行중임. ○ 한.미간 사회보장세 조세협정 체결 추진 요망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EW YORK

발송번호	9308-0084	발송일자	1994.08.11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한국계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강화 (한국계 7개 종합상사)		
의견	<p>○ 편파조사의 Evidence나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는 것은 특정기업이 거론되므로 어려움점이 있으나, IRS의 한국계기업에 대한 감사 빈도수, Clinton 行政府의 세무정책을 볼 때 현지 세무전문가들은 보편적으로 IRS가 한국계기업에 편견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p> <p>- 한국계 7개 종합무역상사 현지법인이 모두 세무조사대상이고, 자산규모가 일정수준이상의 한국계 대기업은 거의 모두 세무조사 중이거나 종결경험이 있음.</p> <p>○ IRS는 외국계기업에 대한 과세강화조치 일환으로 외국계 기업의 이자비용이 과다한 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경비처리를 제한하기 위해 93년부터 요건을 강화함.</p> <p>- 즉, 외국 모회사가 미국내 자회사를 위해 제3자 銀行에 대출보증을 하였을 때 이를 본사대출로 간주하여 미연방세법(IRC : Internal Revenue Code) Section 163(j)에 의거하여 이에 해당하는 이자비용 공제를 제한하여 한국계 현지법인의 현지금융운용에 심각한 문제 야기가 우려됨.</p> <p>○ 또한, IRS 일선조사관의 한국계 기업에 대한 감사태도가 기세무신고 내용의 적합성을 확인하는 일반조사가 아니라 세수증대를 위한 과세조정에 목표를 두고 있고 이를 뒷받침할 근거를 찾으려 하기 때문에 편파적인 조사로 볼수 있음.</p> <p>○ 또한 감사 施行시 통상적 수감기간이 장기화되고 있으며, Audit 법정유효기간연장을 요구하고 있는 사례도 많음.</p> <p>*93.1, 뉴욕 상공회의소(KOCHAM)이 뉴욕, 뉴저지지역 소재 한국계 기업을 대상으로한 설문조사에서 IRS감사를 현재 받고 있다고 답한 12개 기업중 50%가 IRS조사가 시작된지 2년이 경과되었고, 향후 언제 조사가 종결될지 예측할 수 없다고 함.</p>		
건의사항	<p>○ 간접세액 공제제도 도입</p> <p>- 현지법인이 한국본사에 배당소득을 지급할 경우 한국의 본사가 배당을 받음에 따라 미정부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 공제 등으로 이중과세부담 방지 필요</p> <p>○ 증자에 대한 본국 行政절차 간소화</p> <p>- IRS 세무조사대책중 가장 시급한 것이 현지법인의 재무구조 및 수익력 개선인데, 이를 위해 증자가 필연적임.</p> <p>- 그러나, 본국 行政절차가 까다롭고, 복잡하며, 소요시간도 길어 이중고를 겪게됨.</p>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EW YORK

발송번호	9306-0106	발송일자	1994.08.19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지상사 주재원 비자 발급 제한 (삼성 전자지사)		
의견	<p>○ 미국의 이민법상 지상사 파견 주재원에 대해 E-1, E-2가 발급될 수 있음. 대기업 및 중소기업의 경우 규정상 E-1(條約에 따른 미국과의 무역종사자 및 그가족)이 발급되어야 하나 동 비자발급 자격이 파견자의 모기업 전체 거래중 미국과의 거래비중이 50%에 달해야 발급토록 되어 있음.</p> <p>○ E-2는 條約에 따라 미국에 투자를 한 자 및 가족에 발급되고 있으며 E-1발급이 불가능한 대기업 주재원의 경우 편법으로 현지법인 소속 또는 지사를 설립하는 등 우회수단을 사용하여 E-2 주재원 비자를 취득하고 있는 실정이라 함.</p>		
건의사항	<p>○ 그러나 대기업의 경우 시장다변화를 통해 현재의 대미 의존도는 매우 낮은 실정임. 따라서 현재 우리나라의 대미 무역비중이 20%선임을 감안시 동 거래비중 조항을 무역비중과 유사하거나 이보다 낮은수준으로 조정해줄 것이 필요함.</p>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MIAMI

발송번호	9305-0097	발송일자	1994.08.12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163(j) (Earnings Stripping) 적용 (박용건(K.Young Inc))		
의견	<p>○ 94. 1. 1부로 施行되는 163(j) (Earnings Stripping) 적용에 관련하여 당사의 경우 본사로부터 지급보증을 받아 용자를 일으키나, 건설금융인 관계로 해당용자에 대한 이자를 회계 慣行상 영업의 비용으로 계상치 않고 공사원가로 처리함.</p> <p>○ 따라서, 공사원가로 처리된 본사보증 용자의 이자도 163(j)에 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여부가 아직 불분명한 상태임. 당사에서는 별도로 Big CPA Firm들에 문의하였으나 적용이 안되는 것으로 추정할 뿐 확답을 얻지 못하였음.</p>		
건의사항	이 사안에 대한 IRS의 원칙적인 설명과 지침을 요망		
관련법규	미 연방세법 Section 163(j)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LOSANGELES

발송번호	9308-0096	발송일자	1994.08.11
수신처	지역조사부	(참조)	
신고건명 (신고인)	자동차 평균연비 규정(Cafe) ()		
의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은 한국과 대만이 배기량 기준으로 자동차 세금을 부과하고 있어 미국산 대형차가 이들 국가산 소형차에 비해 차별대우를 받고 있다고 항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형엔진을 장착한 미국산차의 수입제한 효과 유발 ○ 미국은 자동차의 평균연비(CAFE ; COOPERATE AVERAGE FUEL ECONOMY)요건으로 평균연비지침을 충족하지 못한 자동차에 과징금을 부과하고 있어 유사한 수입제한효과를 거두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EU측은 CAFE세금이 유럽산 고급승용차에 대해서만 이제까지 징수되어 왔다고 비난하고 있음. 		
건의사항			
관련법규			
유첨			
보고자	무역관장	무역관	NEW YORK

II. 국내 기업의 애로 사항

신고번호	5001	신고일자	1994.06.30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주)태양강업	
	주소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 1544-2 한양 2층	
	전화번호	02-522-3589	FAX 번호 02-522-3588
<p>내 용 ○ 선적전 검사</p> <p>-동남아지역 수출의 경우 ITEM에 따라 SGS INSPECTION을 득한 후 수출이 가능하므로 신용장 개설시 SHIPPING DATE 및 EXPIRY DATE CHECK를 하여야 하며 또한 삼각무역의 경우 신용자조항에서 요구하는 SGS검사 기관의 SECURITY LABEL이 외국의 형식상 EXPORTER에게 발급되고 있음으로 네고시 큰 예로사항이 되고 있음.</p> <p>요망사항 ○ SGS INSPECTION대신 C/O로 대치할수있는 방안이 요구되며 불가능시 삼각무역의 경우 DIRECT L/C를 받고 제3자에게 COMMISSION AGREEMENT를 작성해서 COMMISSION을 송금하는것이 옳바르므로 시정요망.</p>			
유 침			

신고번호	5002	신고일자	1994.06.30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한국석유화학 공업협회	
	주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6층	
	전화번호	02-744-0116/9	FAX 번호 02-743-1887
<p>내용 ○ 수출의무履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또한 모든 생산제품에 수출의무가 있는 현지투자법인에 대하여 품질이 다소불량하여 수출이 곤란한 제품 즉, LOSS분을 인정하고 있으나 이러한 제품의 일부분을 자국내에 판매하기만 하여도 전 LOSS분에 대하여 면세된 수입관세(35%)를 부과하고 있으며 LOSS분에 대한 국내판매의 인정 여부도 가변성이 많음. ○ 중국은 增値稅(V.A.T)를 '94. 1.1부터 17% 세율을 적용하여 실시키로 하였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施行방안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환급기간도 정해지고 있지 않음. ○ 한편 수출용 원부자재중 특정자재를 반드시 해당자재의 생산시설을 보유한 구매자에게 상당한 불이익과 조달상의 불편 야기 <p>요망사항</p>			
유첨 석유화학 공업협회 보고서			

신고번호	5004	신고일자	1994.06.30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주) 두산전자 수출팀	
	주소	충북 괴산군 증평읍 용강리 661	
	전화번호	0445-820-8315	FAX 번호 0445-838-3755
<p>내용 ○ 수출대금 결제 지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란과의 거래시 신용장 조건으로 거래시 CUSTOMER의 결제에도 불구하고 이란정부(銀行)에서의 외화지급을 동결, 결제에 애로가 큼. <p>요망사항</p>			
유첨			

신고번호	5007	신고일자	1994.07.12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주. 효성물산)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1-1 효성빌딩	
	전화번호	02-771-1100	FAX 번호 02-771-1665
<p>내용 ○ 송장 작성시 제품의 S/N 기재 요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는 생산자가 생산관리, 품질보증 등을 위해 제품과 포장지에 표시하는 SERIAL NUMBER를 송장에 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음. - 그러나 일반적으로 생산자는 제품을 창고에서 무작위로 추출하여 선적하게 되므로 제품의 S/N과 송장상의 번호가 틀리는 경우가 발생하여 통관이 지연되고 있음. <p>예) 컬러TV10,000세트를 생산하여 S/N를 1번부터 10,000번까지 붙이는 경우 창고에 번호순으로 적재하기 어려우며 출고할 때라도 번호순대로 출고해야 할 이유가 없음. 따라서 송장에 제품의 S/N을 기재토록 하는 것은 무리한 요구임.</p> <p>요망사항 ○ 선적서류에 SERIAL NUMBER기재 의무를 삭제하고 수입수량의 확인은 CARTON NUMBER로 할 수 있도록 조치요망</p>			
유첨			

신고번호	5008	신고일자	1994.07.12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주. 효성물산)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1-1 효성빌딩	
	전화번호	02-771-1100	FAX 번호 02-771-1666
<p>내용 ○ 현지 수입상 및 銀行간의 부정 담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멕시코 수출시 선적서류에 하자가 있어 멕시코의 신용장 개설 銀行에서 지급을 유보하고 바이어에게 선적서류의 수리여부를 조회하는 경우 조회결과에 대한 통지가 없어 피해를 입게 됨. <p>요망사항 ○ 멕시코의 신용장 개설 銀行이 바이어와 결탁하는 등의 부당行爲를 지양하고 국제상거래 慣行과의 조화를 위해 선적서류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수리사실을 수출자 및 매입 銀行에게 통지하도록 개선요망</p>			
유첨			

신고번호	5009	신고일자	1994.07.12
신 고 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대한상공회의소 (주. 효성물산)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1-1 효성빌딩	
	전화번호	02-771-1100	FAX 번호 02-771-1666
<p>내 용 ○ 정책변경 사전 공고 미흡</p> <p>- 멕시코는 무역관련 규정을 새로 施行할 경우 수출자가 그 규정을 선적전에 파악하여 준비할 수 있도록 해야함에도 발표 후 바로 적용함으로써 종전 규정에 따라 선적한 물건이 멕시코에 도착한 때에는 새로운 규정적용으로 통관에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음.</p> <p>(예) Norma Oficina Mexicana 라는 규정은 3월27일 변경사실을 발표하고 곧바로 4월1일 통관분부터 적용함에 따라 이미 선적한 물량에서 문제가 발생.</p> <p>요망사항 ○ 무역관련 규정의 개정시에는 경과규정을 두어 관련규정의 개정이전 施行에 대해서는 개정 규정의 적용을 배제토록 개선요망</p>			
유 첨			

신고번호	5010	신고일자	1994.07.12
신 고 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대한상공회의소(주. 효성물산)	
	주소	서울시 중구 서소문동 21-1 효성빌딩	
	전화번호	02-771-1100	FAX 번호 02-771-1666
<p>내 용 ○ 타이어, 국제공인규격 불인정</p> <p>- 멕시코는 국제공인 TEST규격 (D.O.T.E. E-MARK)을 인정하지 않고 모든 수입타이어에 N.O.M (Norma Oficina Mexicana)TEST를 필수조건으로 하고있음.</p> <p>- 또 '93년 20월에는 상공성에서 교통성으로 주관부서를 옮겨 기테스트 완료건에 대해서도 재테스트를 요구했을뿐만 아니라 선적 및 통관이 進行中인 오더에 대해서도 새로운 규정을 적용하려 하고있음.</p> <p>요망사항 ○ 국제공인 TEST규격 (D.O.T.E-MARK)을 수입기준으로 하도록 개선요망</p>			
유 첨			

신고번호	5013	신고일자	1994.07.12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한국 섬유 직물 수출조합 (주. 태원협업)	
	주소	서울시 중구 명동2가 31-1 (제일빌딩 1402호)	
	전화번호	02-771-4187/9	FAX 번호 02-775-0447
<p>내 용 ○ 선적전 검사</p> <p>- 페루지역은 SGS등 수입업자의 검사가 동반되는데 본 검사에는 많은 서류상의 번잡과 까다로움이 따라 수출확대 측면에서 볼 때 바람직하지 못함.</p> <p>요망사항 ○ SGS 및 수입국 검사의 완화 또는 폐지 요망</p>			
유 첨			

신고번호	5014	신고일자	1994.07.12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한국 섬유 직물 수출조합 (주. 태창기업)	
	주소	부산 직할시 금정구 부곡동 315번지	
	전화번호	051-512-2211	FAX 번호 051-512-2220

내 용 ○ 홍콩 지사 설치시 에로

- 국내에서의 進行절차는 간단하나 현지에서 지사 설치후 설치소요 비용등에 대한 내역을 현지공관에 제출하여야 함.
 - 형식적인 요구사항
 - 우편접수등은 허용되지 않으며 반드시 본인이 제출하여야함
- 요구절차 및 구비서류에 대한 자료부족
 - 당사자가 CASE BY CASE로 직접 방문하여 문의하고 준비해야 함으로 시간적인 손실이 많음

○ 현지 진출 자료의 부족

- 일본 등의 경우 현지에 진출을 위한 자료들이 잘비치 되어 있고 정보의 제공을 JETRO등에서 遂行하나 국내의 경우 KOTRA 에서 제공되는 기본적인 INFORMATION외에는 자료가 부족한 상황임.
- 기존 진출업체와의 인맥 등이 없을시 준비에대한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음.

○ SAMPLE의 반품에 대한 制約

- 홍콩의 현지 법규상 어떠한 물품도 해외로 반출시 실질적인 SIZE 및 금액에 관계없이 E/L을 요구하며 E/L을 받기위해서는 2일이 소요됨(L/DIP을 위한 SWATCH도 포함)
- 시간에 촉박한 샘플 및, L/DIP를 국내로 발송시 규제가 비교적 적은 소형업체에 의존해야 하며 이때 배달 지연은 물론 분실 사고 까지 빈번히 발생

○ 현지법규의 制約

- BRANCH OFFICE의 경우 본사와 모든 선적 및 재무상태를 연결하여 평가하고 과세
 - 초기진출 업체의 경우 실질적인 실적이 미비함에도 불구하고 본사와 함께 평가하여 과세

요망사항

유 침

신고번호	5039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농수산물 유통공사(한국 수산물 수출조합)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무역센터 1904)	
	전화번호	02-551-1927	FAX 번호 02-551-1931
<p>내 용 ○ 수산물 수입쿼타</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통산성과 수산청은 매년 2회 수입쿼타 품목에 대한 연간 대한민국 수입할당액 40백만불을 확정, 이를 일본 수산물 수입 협의회 산하 수입업체(約26개사)의 수입실적에 따라 할당함으로써 수입금액 및 수입업체를 제한하고 있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쿼타한도(93): 전세계(3억5,94백만달러), 한국(40백만 달러) . 쿼타품목: 대구, 정어리, 전갱이, 꽁치, 방어, 고등어, 패주(조개) - 기존 쿼타 수입업체의 경우 쿼타 우선배분으로 수입에 지장이 없으나 신규 수입업체의 경우 쿼타 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가격등 다른조건이 맞아도 불가능한 경우 많이 발생 <p>요망사항 ○ 수입업자를 제한하는 수입쿼타제를 철폐폐하도록 하는것이 필요하며 철폐 유예기간 동안 수입쿼타물량을 확대하거나 신규 수입상에 대한 적절한 배정 등 조건 환화를 요청함.</p>			
<p>유 첨 한국 수산물 수출조합 애로신고서 1부</p>			

신고번호	5028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 (우성식품)	
	주소	서울, 송파구 가락동 600, 농수산물 도매시장 가공처리장	
	전화번호	02-404-4242	FAX 번호 02-404-4627
내용	<p>○ 일본의 맛김 수입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김은 (CCCN NO-2106-90)은 일본의경우 수입추천품목이며 일본측은 한국의 맛김 제조공정상 식용유 사용을 이유로 쿼타배정을 거부하고 있음. - 마른김 (CCCN NO-1212-20)은 수입제한 품목으로 수입쿼타를 설정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쿼타업체(수입상사)는 김 수입후 전량 김협회에 판매한다는 契約을 맺고 있음. - 전어런 김협회는 '77년 이후 다른 상사와는 수입김을 수매한 실적이 없음. 그결과 한국산 마른김은 77-92년까지 16년간 일본수출 실적 전무. <p>요망사항 ○ 일본의 마른김 수입규제는 GATT Article XI-2-(C)에 의거하여 수입 제한에 있어 최소시장 접근 보장에 위배되는 것으로 판단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공정契約 수입상사가 김수입후 전어런에 전량 판매하는것을 철폐하고 수요자(가공업자)할당으로 전환 필요 ○ 일본시장의 규격에 맞출 수 있도록 전월 상반기중 익년도 수입량 사전 제시 		
유첨			

신고번호	5033	신고일자	1994.07.13
신 고 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농수산물 유통공사(개암식품)	
	주소	서울시 서초구 양재2동 320 개암빌딩	
	전화번호	02-579-3541	FAX 번호 02-573-4016
<p>내 용 ○ 일본의 염수입 제한</p> <p>- 일본의 전매청에서는 염도가 60% 이하인 저염만 수입토록 되어 있어 한국 죽염의 경우 고염도(염도 93%이상)인 경우 수입요구는 있어도 수출을 하지 못하는 상황임.</p> <p>요망사항 ○ 일본 전매청에 대해 현재 施行되고 있는 염도제한을 철폐케 하여 선호도 높은 죽염제품 등이 수출될 수 있도록 조치 요망</p>			
유 첨			

신고번호	5043	신고일자	1994.07.28
신 고 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SUNBIRD OA SUPPLIES CO., LTD	
	주소	26/6 B LIEN TINH 15 ST., NHABE, HOCHIMINH CITY	
	전화번호	728518	FAX 번호 84-8-728517

내 용 ○ 기업 운영 의사결정상의 애로

당사는 컴퓨터 및 타자기용 리본을 제조하는 업체로 '93. 7월에 베트남 정부로부터 단독투자인가를 받았으며, 인가기간 20년, 초기 투자액 US\$650,000중 자본금 US\$200,000 규모로 호치민시에 회사를 설립하였음. 원래 베트남 현지업체와 합작관계도 고려해 보았으나 합작기업 운영상 제도적으로 많은 制約사항이 있어 단독투자를 결정하였음. 우선 베트남내 외국인 투자관련 법규상 하기와 같은 문제점이 있어 이를 예로들고 베트남 투자희망업체에게 새로운 해결방안이 있기를 바랍.

1. 관련법규 : 외국인 투자법

- 규정 : 제39조(기업의 중요사안에 대한 이사회 의결 정족수 규정)
 - 만장일치 : 생산 및 사업계획, 예산 및 銀行대부, 정관개정, 대표이사, 수석부사장, 회계책임자의 임명 등)
- 규정 : 제 40조(임원결정에 있어 현지인 채용규정)
 - 대표이사 또는 수석부사장중 1인은 베트남인이어야 함.
- 규정 : 제 30조(외국인 투자비율은 30% 이상)

2. 문제점 : 기업운영에 관한 의사결정은 투자비율(자본율)에 의거한 의결이어야 하나 법으로 이에 관계없이 정하여져 있어, 자유시장 경제원리에 위반됨.

요망사항 범 정부적인 차원에서 베트남 정부에 불합리성 언급 요망

유 첨

신고번호	5040	신고일자	1994.07.28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로보트 보일러	
	주소	인천시 북구 청천동 180-5	
	전화번호	02)631-0101/9	FAX 번호 02)631-0110
<p>내용</p> <p>○ 외화 및 원.부자재 조달애로(중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부자재의 수입 및 기타 운영상 필요한 외화조달의 어려움 : 외자기업은 원자재 수입, 이익송금 등 운영상 필요한 외환을 스스로 해결해야 함(중외합자 경영기업실시 조례 제75조, 중화인민공화국 외자기업법 실시 세칙 제 56조) - 중국투자기업이 수출제품을 생산키 위한 원부자재의 수입시 관세가 면제이나, 내수시에는 높은관세(20-40%)를 부과함. - '95년부터 세계개편으로 내수 판매시 적용되는 세율의 상승 : 종전에는 품목별로 상이한 세율(공상 통일세 5%)이 적용되었으나 현재는 모든품목에 일률적으로 동일한 세율(중치세 17%) 적용 . 공상통일세 : 수출입 및 중국내 판매시 부과 . 중치세 : 중국내 판매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 판매대금 회수의 어려움 → 중국인의 낮은 거래신용도 - 제품별 시장(수요)정보의 부족 <p>요망사항 ○ 향후 중국의 가장 큰 투자이점인 시장개척의 확대를 위해서는 업종별(제품별) 투자진출여건과 더불어 시장구습 및 마케팅방법에 대한 자세한 조사가 요망됨.</p>			
유 침			

신고번호	5041	신고일자	1994.07.28	
신고인	성명	한복선	직책	사원
	회사(기관)	신성상사		
	주소	성동구 성수2가 310-64		
	전화번호	02)462-4711/2	FAX 번호	02)461-2214
<p>내 용 ○ 투자관련 정보 입수 곤란(인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진국에 비해 인도는 투자정보 구하기가 더욱 어려움. - 인도 MIDAS 공단(봄베이)에 입주예정이므로 공단입주관련서류를 받았는데 해당기관의 의견서중 2종류가 인도어로 되어있어 내용 파악이 어려웠음. <p>요망사항 ○ 인도의 "투자정보센터" 등에 인도 정부차원에서 인도의 투자환경 홍보를 위한 구체적인 자료발간에 힘써줄 수 있도록 협조요망 ○ 외국인 투자관련 모든 서류는 영문화하여 입주자의 편리를 도와주기 바람.</p>				
유 침				

신고번호	5042	신고일자	1994.07.28
신 고 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정유통상(C & H)	
	주소	강남구 논현동 58(우진 B/D)	
	전화번호	02)511-0507	FAX 번호 02)546-3853
<p>내 용 ○ 정책 변동에 따른 애로(스리랑카)</p> <p>- 현재 스리랑카에 진출한 봉제 완구업체로서 사업확장을 위해 봉제공장이 있는 비아가마내에 스웨터 제조공장 설립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나 대통령 선거 公約(1993)인 국내지역의 균등한 발전을 위해 이 지역투자가 불가능하며 현재 타지역 개발 프로젝트 참여를 통한 사업확장만이 가능한 실정임.</p> <p>- 6월부터 염색공장이 가동된 상태이고 인근지역 부지 또는 확보된 상태로서 업무연계, 수송비 절감, 원부자재 공급면에서 유리함에도 불구하고 타지역에 공장설립하므로써 여러면에서 불리한 요건을 감수해야 하는 상황임</p> <p>* 대통령 선거 公約으로 근거규정은 없으며, 스리랑카 투자청(BOI)이나 상공부등을 접촉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p> <p>요망사항 회사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예외규정 제정 내지 규제완화 (기투자기업의 재투자 또는 확장투자시는 기투자 인근지역에 투자할 수 있도록 편의 제공 희망)</p>			
유 침			

신고번호	5003	신고일자	1994.06.30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한국석유화학 공업협회	
	주소	서울시 종로구 연지동 1-1 여전도회관 6층	
	전화번호	02-744-0116/9	FAX 번호 02-744-1887
<p>내 용 ○ 해외투자 인허가 업무의 지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신청에서 투자완료 까지 6개월이상 소요되고 있어 적기에 해외진출의 장애가 되고 있음. - 금융기관의 수출금융업무 취급시 국내법인과 현지 투자법인간의 거래를 수출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해서 자금 유통상 어려움이 수반되며 한국내 공장 및 현지국 공장에 일정한 재고 보유로 인한 재고유지비 부담이 큰 실정임. - 외국업체들로 부터 자국에 대한 합작투자 제의 등을 받을경우 이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위하여 투자대상국의 외자정책, 산업 및 무역구조, 노동환경 등 투자환경의 면밀한 분석.평가가 필수적으로 요구되나 기존에 발간.배포되고 있는 자료의 내용이 貧弱하고 진부하여 실무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에는 微弱함. <p>요망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투자 인허가 업무의 신속처리 ○ 국내법인과 현지투자 법인간의 거래에대한 금융지원 ○ 투자대상국에 대한 실질적 정보제공 강화 <p>유 첨 한국석유화학협회 애로신고서 1부</p>			

신고번호	5011	신고일자	1994.07.12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한국섬유 직물 수출조합(주. 삼부산업)	
	주소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211-2번지	
	전화번호	02-202-4501	FAX 번호 02-202-4500
<p>내 용 ○ 상품분류 혼란에 따른 애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MAGIC TAPE는 국내 관세청 분류상에는 9606.10.0000류에 분류되어 수출 자동 승인품목이나 미국세관에서 통관상 직물류인 5806.20류에 분류하여 조합의 추천(VISA)를 받도록 되어있음. - 따라서 수출통관을 위해서는 銀行에서 E/L(수출승인)을 받아야 하고 수출서류 (NEGO용)를 위해서는 조합의 추천을 받아야 하는 업무 중복의 어려움 및 각기관 담당부서의 담당자가 바뀔때마다 이에 대한 해명을 요구하고 있어 수출상은 상당한 애로점이 되고 있음. <p>요망사항 ○ H.S CODE상의 분류를 가능한 5806으로 일원화 또는 현재 미국 수출의 특이사항(미국만 5806으로 분류)을 인정하여 수출업무에 장애가 되고있는 동사항 해소 요망</p>			
유 첨			

신고번호	5012	신고일자	1994.07.12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한국섬유 직물수출조합 (주. 재동무역)	
	주소		
	전화번호	02-757-9761	FAX 번호 02-757-9763
<p>내 용 ○ 공진청 손실 고시율 미흡</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레이온 직물은 다른섬유와 다르게 품질이 매우 弱하여 실제 작업시 잘 찢어지고 縮小가 많이 되어 다년간 국내 염색공장에서 전처리 LOSS 12%, 나염공장에서는 나염 LOSS 6% 등 합계 18%를 주고 있음. - 그러나 現行 공업진흥청 고시율은 7.26% 밖에 되지않아 관세 환급을 받지못하고 있으며 또한 관세액이 손비로 처리되어 원가에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음. <p>요망사항 ○ 공업진흥청 LOSS율을 (전,후 처리) 합계 7.26%로 부터 실제 LOSS율인 18%(RAYON FUJIETTE)로 상향 조절 요망</p>			
유 침			

신고번호	5015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주)대림엔지니어링 (기획실)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5	
	전화번호	02-369-4104	FAX 번호 02-780-6025
내용	<p>○ 해외건설과 관련된 상충된 국내 제도 ("해외건설 도급허가"를 산업설비수출 수주계획신고"로 변경)</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프로젝트 수주는 업무범위가 용역에 해당하므로 건설부로부터 "해외건설 도급허가"를 득하여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업주의 사정으로 기자재 공급을 契約者の 업무범위에 추가하면서 금융제공 (FINANCING)도 함께 요구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음. - 현재 건설부의 "해외건설 도급허가"만으로는 수출입 銀行에서 금융을 일으킬수 없는 관계로 부득이 "해외건설 도급허가"를 취소 또는 철회하고 상공부의 "산업설비수출 수주계획신고"로 대체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함. 즉 기술제공 전이나 제공후의 FINANCING에 대한 법적 근거는 동일 프로젝트이나 절차상 하나의 허가나 신고로 銀行의 금융지원이 불가능함. <p>요망사항 ○ 상기건의 경우 업체가 이미 건설부(해외건설협회)에 도급허가를 받은 사안인 관계로 도급허가의 취소 또한 쉽지않은 현실을 감안 수출촉진 차원에서 양부처(상공부, 건설부)가 상호협력 또는 기본 방침을 수립하여 수출업체가 제도상의 문제로 인하여 수출에 지장을 받지 않도록 조치요망.</p>		
유첨			

신고번호	5016	신고일자	1994.07.13
신 고 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주)대림엔지니어링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5	
	전화번호	02-369-4104	FAX 번호 02-780-6025
내 용 ○ 산업설비수출 수주계획상의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업체가 동일한 국제입찰건에 대하여 원청입찰자와 외국 경쟁업체의 하청자로 구분되는 경우 국익차원과 수출질서 유지 측면에서 원청사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우선권이 필요함 - 또한 금액기준(US\$1억)으로 신고기관이 2원화 되어있는 점을 감안 "산업설비수출 수주계획 신고" 수리전에 철저한 상호 확인이 필요함. 			
요망사항			
유 첨			

신고번호	5017	신고일자	1994.07.13
신 고 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주)대림엔지니어링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5	
	전화번호	02-369-4104	FAX 번호 02-780-6025
내 용 ○ 포괄보험 적용 제한			
<p>- SUPPLIER'S CREDIT FINANCING (공급자 신용) 조건부 공사의 경우 현재 수출 보험공사의 규정에 의하여 인도전, 인도 후를 연계시켜 부보하고 있음. 이 경우 포괄보험 할인을 혜택(50%)은 인도 후에만 적용됨.</p>			
요망사항 ○ 동건은 결과적으로 보험료가 상승하게 되어 국제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이 되고있으므로 연계부보의 경우에도 인도 전까지 포괄보험 할인혜택 조치가 필요함.			
유 침			

신고번호	5018	신고일자	1994.07.13
신 고 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주)대림엔지니어링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5	
	전화번호	02-369-4104	FAX 번호 02-780-6025
내 용 ○ E/L발급상의 애로			
<p>- 해외 산업설비수출 契約과 관련하여 최근에는 본契約 체결전에 LETTER OF INTEND (L/I)를 발급하여 공사를 착공한 후 상당기간 (3-4개월) 경과후에 契約을 체결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함.</p> <p>- 동 경우는 본 契約이 체결되지 않은 관계로 E/L(수출승인서)발급이 되지않고 E/L이 없으면 각종 BOND발급 및 선수금 수령이 되지 않고 있음.</p>			
요망사항 ○ L/I발급과 함께 공사가 시작되면 L/I를 근거로 E/L발급 요망			
유 침			

신고번호	5019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주)대림엔지니어링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5	
	전화번호	02-369-4104	FAX 번호 02-780-6025
<p>내 용 ○ 중복되는 금융관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URN KEY BASE 공사의 경우 산업설비수출 수주계획 신고시 상공자원부에서 건설부 또는 노동부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이 경우 외환관리법상 주거래銀行의 해외건설 및 용역契約 인증을 득하게하여 자금관리를 하게 됨. - 그러나 수출입銀行은 내부규정에 의하여 업체의 자금소요를 철저히 검토한 후 대출을 施行하며 신규대출 전에는 종전 대출부에 대한 사후관리도 하고 있음. 다시 주거래 銀行의 자금관리를 받는 것은 업체의 입장에서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이중으로 자금관리를 받게되는 것으로 애로가 큼. <p>요망사항 ○ 상기 TURN KEY BASE 공사로서 수출입 銀行의 금융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주거래 銀行의 "해외건설 및 용역契約 인증"을 받는 제도를 폐지 하여 자금관리의 일원화가 필요함.</p>			
유 첨			

신고번호	5020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주)대림엔지니어링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5	
	전화번호	02-369-4104	FAX 번호 02-780-6025

내용 ○ 기술 사용료에 대한 원천 과세
(관련법규: 법인세 제 55조 제1항 제9호)

- 국내 법인이 수주한 해외 T/K PROJECT를 遂行함에 있어 해외 현장에서 사용하는 기술(LICENCE)사용에 대한 대가를 국내에서 지급할 때 원천과세 하고 있음.
- 이때 기술공여자가 국내법인에게 원천세액을 전가시키면 전가된 세금이 원가에 반영되어 경쟁력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함.

요망사항 ○ 해외 PLANT수출 목적으로 도입하는 기술용역대가 지급에 대한 원천세의 부과를 면제해 주는 것이 필요함.
(지급지주의 →원천지국주의)

유첨

신고번호	5021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주) 대림엔지니어링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5	
	전화번호	02-369-4104	FAX 번호 02-780-6025

내용 ○ 해외 Project에 대한 소득표준율 조정

- 장기 도급공사인 경우 국내업체의 현황을 조사하여 정한 소득표준율을 각종 여건이 상이한 해외 PLANT수출공사에도 동일한 소득표준율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산토록 하고 있으나 이는 매우 비현실적이며 불합리함.

요망사항 ○ 해외 PROJECT의 경우 완성기준을 적용하여 수입금액을 계상하거나 해외 PROJECT에만 적용할 수 있는 소득 표준율을 별도로 정하는 것이 필요함.

유첨

신고번호	5022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주)대림엔지니어링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5	
	전화번호	02-369-4104	FAX 번호
<p>내용 ○ 영세 발주업체에 대한 영세율 적용 확대</p> <p>- LOCAL L/C 또는 구매승인서를 발급받을 수 없을 정도로 담보력이 脆弱한 영세기자재 생산업체에 발주하는 경우에는 산업설비 수출 용역업체(발주처)가 부가세를 선지불한 후 부가세 신고시 환급을 받고 있는 관계로 부가세 환급을 받을 때까지 선지불한 세금이 자금부담이 되고있음.</p> <p>요망사항 ○ 산업설비 수출과 관련한 발주인 경우 하도급 업체가 공급하는 기자재 또는 용역에 대하여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도록 조치 하는것이 필요함.</p>			
유첨			

신고번호	5023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주)대림엔지니어링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5	
	전화번호	02-369-4104	FAX 번호
<p>내용 ○ AGENT 수수료 지급상의 애로</p> <p>- 해외 PROJECT에 있어서 AGENT활용은 필수적인 요소가 되고 있음. 산업설비 수출수주 계획 신고시 PROJECT인 경우 AGENT FEE지급은 PROGRESS로 지불토록 되어있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p> <p>요망사항 ○ AGENT 활용시 AGENT와의 契約조건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개선 필요.</p>			
유첨			

신고번호	5024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주)대림엔지니어링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5	
	전화번호	02-369-4104	FAX 번호 02-780-6025
<p>내 용 ○ 플랜트 수출시 금융상의 애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TURN KEY BASE방식으로 PLANT수출할 경우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OFF SHORE CONTRACT와 ON SHORE CONTRACT를 분리하여 契約하게 되며 ON SHORE CONTRACT는 차관공여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으나 현지 법인이 한국기업의 투자법인 이라는 것이 증명될 경우에는 FINANCING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음. - 현재 단일 契約이면서 TURN KEY BASE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에 대해서도 FINANCING 대상범위에 포함시키고 있음 <p>요망사항</p>			
유 침			

신고번호	5025	신고일자	192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주)대림엔지니어링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5	
	전화번호	02-369-4104	FAX 번호 02-780-6025
<p>내 용 ○ 연결 재무제표 범위에 해외현지 법인 제외 필요</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해외 현지 법인도 포함하게 되어있으나 통상 해외 현지법인은 PROJECT의 수주등을 위하여 설립해야 하는 경우가 많음 <p>요망사항 ○ 연결재무제표 작성시 해외현지법인은 제외시키거나 현지 세무실정에 맞도록 관련규정의 개정이 필요</p>			
유 침			

신고번호	5026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주)대림엔지니어링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7-5	
	전화번호	02-369-4104	FAX 번호 02-780-6025
<p>내용 ○ 기업의 외화 현금 보유 제한</p> <p>- 외환관리법상 개인의 경우에는 소액에 한하여 외환 현금보유가 가능하나 기업은 외환보유가 제한됨으로 인하여 직원들의 해외출장 등이 빈번한 업체에서는 환율 및 환차 등 환전과 관련한 잡무가 업무 중요도에 비해 과도하게 발생.</p> <p>요망사항 ○ 일정수준의 외환은 기업보유를 허락함으로써 사무생산성 향상에 기여토록 관련규정 개정 필요</p>			
유첨			

신고번호	5027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주)서울증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23-9	
	전화번호	02-368-6543	FAX 번호 02-368-6704
<p>내 용 ○ 증권회사 해외사무소 설치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재무부는 국내 증권사간에 과다 경쟁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97년 까지 해외사무소의 추가설치를 동결한 상태이며 현지법인 및 지점의 전환 여부에 따라 해외사무소의 추가승인 여부를 결정하기로 함. - 그러나 정부가 해외사무소의 설치자체를 규제함으로써 해외 정보의 입수 및 영업활동 등의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 당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해외 사무소를 비교적 많이 운영하고 있는 증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간의 차이가 점차 심화되어 있는 상태임. <p>요망사항 ○ 무한경쟁 시대를 맞아 해외사무소의 설치에 관하여는 궁극적으로는 완전자유화가 되어야 하나 상기와 같은 현실적인 사유 등으로 인하여 전면 施行에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면 현재의 규제수준을 대폭 낮추는 조치가 필요함. (해외사무소의 존립여부는 경쟁을 통하여 각사에서 결정해야 할 사항임) * 관련법규: 외환관리 규정 제 14-17조(해외지사의 설치)</p>			
유 침			

신고번호	5029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농수산물 유통공사(덕성식품)	
	주소	경남 창원시 사림동 157-2	
	전화번호	0551-61-8800	FAX 번호 0551-61-5400
내용	<p>○ 소량건품에 대한 통관지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LCL화물의 경우 냉장 운송이 없음 - 김치 주수출 시장인 일본의 경우 8.9KG/BOX초과되는 건품일 경우 정상적인 통관절차로 인해 1주일 이상 소요됨. . 이로 인해 상품성 저하로 김치 및 회사 이미지를 저하 시키고 있음 <p>요망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량 건품일 경우에도 수송할 수 있는 냉장 컨테이너 운영 ○ 항공 회사의 냉장운송 서비스 요망 ○ 중량이 초과할 지라도 정상 통관절차 면제 ○ 건품 제공후 1차 소량 시험수출일 경우 건품 제공방식과 같은 형태로 통관 ○ 신속한 냉장운송 서비스 요망 		
유첨			

신고번호	5030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농수산물 유통공사(금산인삼 협동조합)	
	주소	충남 금산군, 읍 하옥리 297-5	
	전화번호	0412-53-3731-6	FAX 번호 0412-53-3927제

내 용 ○ 인삼 마케팅 지원 체제 미흡

- 현재 인삼은 한국담배 인삼공사와 한국 인삼 수출공사가 독점하고있고 백삼 및 백삼제품에 있어서도 해당조합에서 수출시 추천 품목임
- 홍삼과 백삼의 경우 최소한 4-6년이 지나야 상품성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이로인해 업체의 자금회전율이 낮음
- 수출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해 자체적으로 홍보할 수 없음
- 한국산 인삼은 가격경쟁력 및 홍보 부족으로 중국산 등에 비해 열위에 있음

요망사항 ○ 인삼, 홍삼, 백삼제품 등 현재 추천 대상품목들에 대해 자유화하여야 하며 영세한 업체에 대해 정부 또는 지정기관에서 생산에서 집하까지의 소득을 보장해 주고 공공기금 등을 통해 품질향상을 위한 자금지원 요망.

- 영세한 업체들이 공동으로 광고가 가능토록 지원요망
- 저년 근삼등으로 다양한 제품개발로 수입상들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어야 함.
- 주요 인삼 수출시장에서 우리 인삼의 우수성을 홍보할 수 있는 심포지엄 개최 및 박람회 등에 출품하여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요

유 침

신고번호	5031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농수산물 유통공사(주. 고제)	
	주소	서울시 중랑구 상봉동 355-5	
	전화번호	02-437-7171	FAX 번호 02-495-8753
<p>내 용 ○ 인삼 포장규격 규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국 L.A지역 등에서 중국삼이나 화기삼의 경우 포장단위의 다양성으로 소비자 선택폭이 다양하나 우리나라 백삼은 포장단위가 300G으로 너무크고 고가로서 구매자의 구매 의욕을 상실 시키고 있음. - 관련 법령인 인삼사업법에는 포장 규격을 상자당 75G,150G,200G,300G,600G으로 제한되어 있고 포장제 회사도 최소 발주수량을 1회 10,000-20,000개로 내세워 재고부담등으로 채산성 악화가 초래됨 <p>요망사항 ○ 현재의 관련 법령에서 제한하고 있는 포장규격을 완화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합등에서 일괄수주 契約하여 업체주문 수량만큼 공급함으로써 중국삼, 화기삼 등과의 경쟁력 제고 요망 			
유 침			

신고번호	5032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농수산물 유통공사(주.삼화물산)	
	주소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562	
	전화번호	02-263-7331/5	FAX 번호 02-263-7336
<p>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형식적 국내 수출검사제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일 수출분에 대하여 생산지 확인서를 첨부해야만 수산물 수출 검사를 받을수 있는바 이는 단지 원가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하여 가격경쟁력의 열위를 가져옴 - 해조류의 대일 수출에 있어 일정한 기준없이 검사를 실시하고 있음 <p>요망사항</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일 수출분에 대한 생산지 확인서는 가공업자의 원가상승의 부담만 가져올 뿐 어민소득 등에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않는바 형식적인 상장제도 폐지 요망 ○ 해조류 수출에 있어 전 품목에 걸쳐 수출검사제도 폐지 요망 			
유첨			

신고번호	5034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농수산물 유통공사(한국 수산물 수출조합)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 (한국무역센터내 1904)	
	전화번호	02-551-1927	FAX 번호 02-551-1931
<p>내용 ○ 국내업자 소유 원양어선의 제3국 국적취득 제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수산업자 소유의 원양어선에 대하여 현재 제3국 국적취득이 제한되어 있는 상황임 - 이로인해 국내 원양어선은 조업이 제한됨으로써 국내 원양업체의 재산성 악화의 원인이 되고 있음. <p>요망사항 ○ 국내 관계기관에서도 동건과 관련 대책회의를 가진 바 있으나 조치결과가 미진한 상태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수산업자 소유의 원양어선에 대해 제3국 국적취득을 양성화하여 원양 어업이 활성화되도록 조치 요망 			
유 침			

신고번호	5035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畜協중앙회	
	주소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51번지	
	전화번호	02-485-3141	FAX 번호 02-475-8253
<p>내용 ○ 畜産사료 수입원료에 대한 고율관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畜産業의 국제경쟁력이 열악한 형편이며 한국 畜産사료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음 - 수입원료는 고율의 관세 및 국내 부가가치세의 부과로 인해 국제경쟁력을 더욱 弱化시키고 있음 <p>요망사항 ○ 국내 畜産業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재 부과하고 있는 수입사료 원료에 대한 무관세 또는 관세완화 조치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畜産사료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를 면제시키는 것이 필요함. 			
유 침			

신고번호	5036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농수산물 유통공사(주, 두성물산)	
	주소	서울시 서초구 르네상스 오피스텔 604	
	전화번호	02-404-1291	FAX 번호 02-404-1295
<p>내 용 ○ 농.수산물 항공운송 애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내 농림수산물 수출시 선도 유지를 위해 항공기를 이용하여야 하는 바 국내 항공운임의 고가로 채산성이 악화되어짐 - 현재 국내 농림 수산물 수출업체의 경우 영세하며 또한 항공 운임의 협정시 항공사와 수출업체간의 개별적인 협정이 체결 되어야 하는 바 소량 다품목을 취급하고 있는 업체로서는 만족할 만한 협정 체결을 기대할 수 없음 <p>요망사항 ○ 농림 수산물 수출화물에 대해서는 現行협정요금을 인하하여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가질 수 있도록 조치 요망</p>			
유 침			

신고번호	5037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농수산물유통공사(한국 농림수산물 수출입조합)	
	주소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59(무역센터 1905)	
	전화번호	02-551-1936	FAX 번호 02-551-1940
<p>내 용 ○ 저장시설 지원체제 미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출품의 품질제고 및 연중 우수한 품질의 지속적인 수출을 위해서는 우수한 저장시설이 필요함 - 저온시설의 설치시 막대한 자금 소요로 인해 영세한 과실 수출 업체들은 사업遂行이 곤란함 <p>요망사항 ○ 농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생산 및 수출이 확대발전을 해야되며 이를통 위해서는 생산뿐만 아니라 수출은 함께 중요시 되어야함</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재 생산자에게만 지원되고 있는 저온창고 및 시설자금을 수출업체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지원할 것이 요청됨. 			
유 침			

신고번호	5038	신고일자	1994.07.13
신고인	성명		직책
	회사(기관)	농수산물 유통공사(주, 중앙화훼종묘)	
	주소	서울시 서초구 르네상스 오피스텔 604	
	전화번호	02-557-8970	FAX 번호 02-579-7089
<p>내 용 ○ 백합류 구근 수입에 대한 관세환급 요망</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일본 수출을 위해 백합류의 구근을 네덜란드 등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는바 구근은 화훼류 원가 부분에 있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 이들 구근류도 수출용 원자재 인바 백합의 수출이후 수입된 구근류에 대해서도 관세환급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로인해 화훼류의 가격경쟁력을 높일수 있음 <p>요망사항 ○ 백합류 수출을 위해 도입된 백합구근류에 대해서도 반드시 관세환급이 되도록 조치 요망.</p>			
유 침			

신고번호	5044	신고일자	1994.07.29
신고인	성명	박병욱	직책
	회사(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 중앙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전화번호	785-0010(574)	FAX 번호 785-0199
<p>내 용 ○ 스테이플에 대한 관세환급 불허</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테이플(HS번호 : 8305-20-0000)이 '93년 2월 관세청 환급고시에 의하여 간이징액환급이 가능하였으나 '94년 2월 고시에서는 삭제되었음. <p>요망사항 ○ 원활한 간이징액환급을 위해 스테이플이 간이징액 환급대상품목에 다시 포함되도록 요망</p>			
유 침			

신고번호	5045	신고일자	1994.07.29
신고인	성명	박병욱	직책
	회사(기관)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주소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6-2	
	전화번호	785-0010(574)	FAX 번호 785-0199
<p>내 용 ○ 스테이플에 대한 수출검사</p> <p>- 필리핀, 인도네시아 등지로 수출시 국내 검정기관인 SGS KOREA에서 검사를 받고 수출하고 있으나 검사방법 등 공정한 검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상당한 애로사항이 있음.</p> <p>요망사항 ○ 검사방법의 완화 등 대책마련</p>			
유 첨			

 KOTRA



KPR0089198